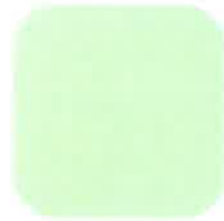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14.1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2014. 1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제 출 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

2014년 11월  
(주)명소아이엠씨



## 0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	4
3. 연구방법 및 체계 .....	4

## 02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1.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	7
2. 정책사업 가이드라인 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 .....	27
3. 농촌테마공원 사업추진 현황분석 시사점 .....	32

## 03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1.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활성화 방안 .....	35
2. 운영 활성화 방안의 적용 사례 .....	42

## 04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성과지표 개발

1. 농촌테마공원 성과지표 개념 및 유사사례 .....	53
2. 농촌테마공원 성과지표(안) .....	59
3. 농촌테마공원 성과지표 활용 및 관리방안 .....	61

## 05 부록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	65
■ 기타 관련 정책사업 가이드라인 사례 .....	148

# 01 서론



1.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2. 정책사업 가이드라인 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
3. 농촌테마공원 사업추진 현황분석 시사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검토 필요

- 2007년부터 시작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전국 68개 지구(2014년 기준)에서 추진 및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 및 운영 효과에 대한 검토 및 점검 필요 시점
- 농촌테마공원 사업의 유형 및 추진 현황에 따른 문제점과 성과를 조사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마련 및 사업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

###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추진 지역 내 파급효과, 궁극적인 목적인 도농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 검토
- 근본적인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조성 후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준비 및 시행, 운영 및 사후관리측면 등 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정비

### ■ 기존 사업지구의 지속가능한 유지와 운영을 위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민과 농촌의 교류 촉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활성화 및 기존 사업지구 활용 다각화 방안 마련
- 각 지자체에서 농촌테마공원이 지역 내 도농교류의 거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유형 및 방안 제시

### ■ 농촌테마공원 실태분석 및 운영활성화 개선방안 필요

- 농촌테마공원은 2007년 부터 추진 시작하여 현재 68개 지구 사업추진 중
- 조성 완료된 지구의 경우 유지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완체계 구축 필요
- 이후 추진할 사업을 위한 사업 유지/운영 및 관리 타당성 제고 필요

연구의  
배경및  
필요성

###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발전방향 모색

- 68개 지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활용방안 모색
- 농촌테마공원의 효율적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발전방안 마련
- 농촌복합산업화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방안 마련

연구의  
목적

전국 68개 지구에 대한 추진현황 분석을 통하여  
농촌테마공원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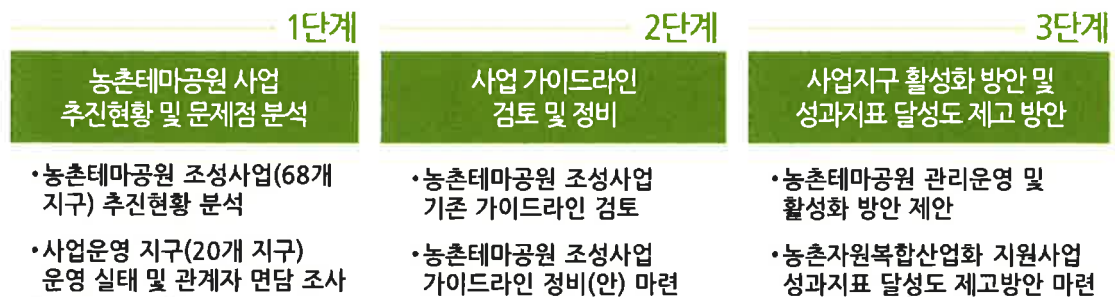
### ■ 공간적 범위

- 전국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구(68개 지구)
  - 조성완료 지구(20개 지구), 사업추진 중인 지구(26개 지구), 계획 중인 지구(22개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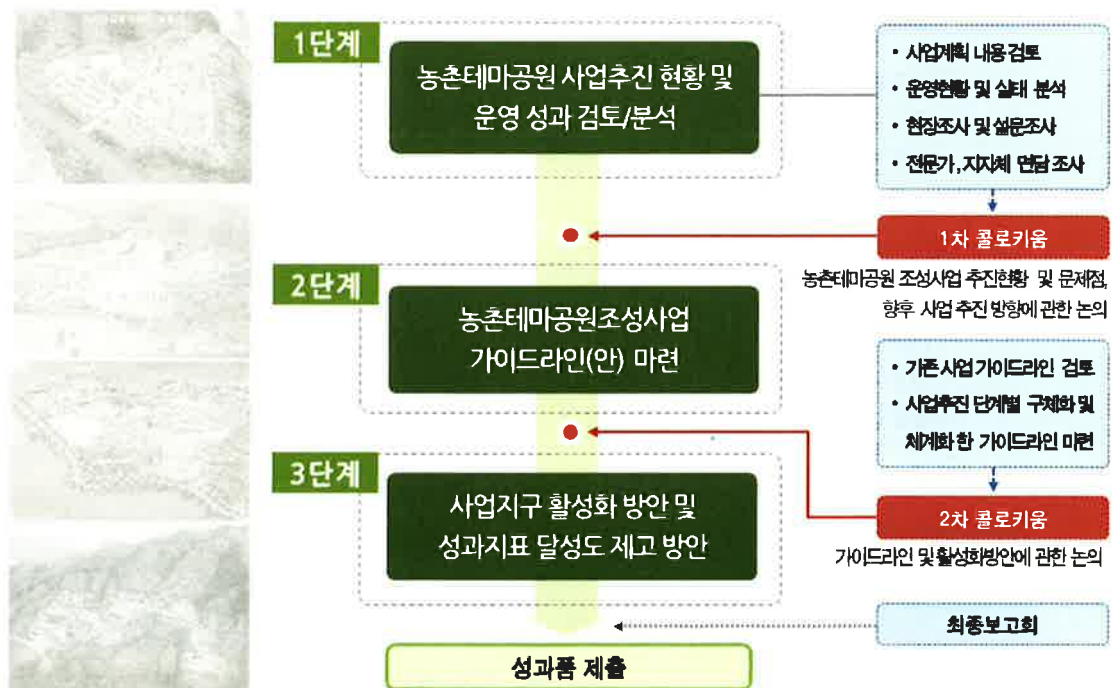
###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4년
- 추진년도 : 2015년(가이드라인 정비 후 적용년도)

### ■ 내용적 범위



## 3. 연구방법 및 체계





## 02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1.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2. 정책사업 가이드라인 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
3. 농촌테마공원 사업추진 현황분석 시사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1.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 가. 사업추진지구 현황조사

### 1) 현황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조상대상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지원하여 현재 사업완료 또는 추진 중인 68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로 설정
- 68개 사업지구 해당 지자체의 농촌테마공원 담당자 및 시설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 및 면담조사 추진

#### ■ 조사목적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별 기본현황, 조성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이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함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현황조사표 형식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온라인을 통해 회수·조사결과 분석, 추가 확인사항은 유선질의(전화조사) 방법 활용

#### ■ 조사기간

- 2014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68개 지구의 농촌테마공원 현황조사표를 배포·회수

#### ■ 조사내용

- 현황조사표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의 기본현황, 시설조성계획 및 현황, 관리운영 계획 및 현황, 기타사항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총 40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

[농촌테마공원 68개 사업지구 현황조사표 구성내용]

구 분	세부내용
기본현황	위치, 면적, 토지소유, 사업비, 사업추진기간, 사업비 집행현황, 단계별 추진주체 등
시설조성계획 및 현황	조성테마, 도입시설(국/도비 지원, 민간자본 도입 구분) 종류 및 배당 사업비, 민간자본 유치 프로그램 여부 등
관리운영계획 및 현황	주체, 인원 수, 소요비용, 자원조달, 입장료, 매출액, 프로그램/홍보 실적, 주민참여 등
기타사항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 사업 변경사항 등

## 2) 현황조사 결과 분석

### 가) 해당 사업지구 기본현황

#### ■ 사업 선정 지역 수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에 안성(신두지구), 음성(원남지구), 서천(동부지구), 영광(불갑지구) 등 4개 사업지구를 시작으로 2014년 평택(오성지구), 홍천(수타사지구), 창녕(합박산지구)까지 매년 사업지구가 선정·추진되고 있음
- 현재까지 총 68개 지역이 농촌테마공원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부터 사업지구가 꾸준히 증가되었고 2010~2013년 매해 10개 이상의 사업지구가 선정되면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구가 급속히 증가하였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 해당지역 및 개소 수]

구 분	개 소	해당지역
2007년	4	안성, 음성, 서천, 영광
2008년	8	이천, 보은, 금산, 김제, 구례, 상주, 울진, 사천
2009년	9	강화, 여주, 양구, 진천, 예산, 진도, 화순, 봉화, 함안
2010년	12	양주, 가평, 고성(강원), 제천, 청원, 익산, 무주, 청도, 영양, 고령, 창원, 의령
2011년	10	울주, 충주, 괴산, 장수, 고창, 장성, 영주, 청송, 고성(경남), 합천
2012년	12	영동, 천안, 홍성, 당진, 진안, 광양, 담양, 곡성, 문경, 영천, 거제, 산청
2013년	10	남구, 옥천, 완주, 신안, 김천, 예천, 칠곡, 포항, 거창, 진주
2014년	3	평택, 홍천, 창녕
합 계	68	

#### ■ 사업지구 분포

- 68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북권이 14개소(20.6%)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권 12개소(17.7%), 전남권 10개소(14.7%), 충북권 9개소(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단위로 경상도 지역(26개소, 38.3%)에 가장 많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음
- 강원권에는 총 3곳이 선정·지원되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비율이 낮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 분포]

구 분	개소	비율(%)	해당지역	구 분	개소	비율(%)	해당지역
수도권	7	10.3	경기도(6), 인천광역시(1)	전북권	7	10.3	전라북도(7)
강원권	3	4.4	강원도(3)	전남권	10	14.7	전라남도(9), 광주광역시(1)
경북권	14	20.6	경상북도(14)	충북권	9	13.2	충청북도(9)
경남권	12	17.7	경상남도(11), 울산광역시(1)	충남권	6	8.8	충청남도(6)

■ 사업추진 단계 현황

- 2014년 3월 기준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지구는 총 20개소이며 준공은 완료되었으나 관리운영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가 1개소(보은 산대지구), 2014년 중하반기 준공 및 개장 예정인 사업지구가 5개소로 조사됨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68개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단계를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완료단계 26개소(38.2%), 공사추진단계 38개소(55.9%), 계획수립단계 4개소(5.9%)이며 현재 공사단계에 해당되는 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의 사업추진 단계 현황]

구 분	개소수	비율(%)	해당지역
사업완료단계	26	38.2	운영 중 : 안성, 음성, 서천, 영광, 이천, 금산, 김제, 구례, 울진, 사천, 강화, 양구, 진천, 예산, 진도, 화순, 봉화, 함안, 무주, 고령 준공 및 개장 예정 : 보은, 여주, 강원 고성, 의령, 영주, 청송
공사추진단계	38	55.9	상주, 양주, 가평, 제천, 청원, 익산, 청도, 영양, 창원, 울주, 충주, 괴산, 장수, 고창, 장성, 경남 고성, 합천, 영동, 천안, 홍성, 당진, 진안, 광양, 담양, 곡성, 문경, 영천, 산청, 완주, 신안, 김천, 예천, 칠곡, 포항, 거창, 진주, 평택, 창녕
계획수립단계	4	5.9	거제, 광주 남구, 옥천, 홍천

■ 사업지구 토지소유 현황

-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현황은 사·군유지를 활용한 지구가 55개소(3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포함한 국·공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저수지/수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사업지구가 대다수임
- 토지매입·보상 관련 절차와 비용 문제로 부지확보 및 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지 활용을 우선 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 토지소유 현황]

구 분	개소	비율(%)
국/공유지	39	26.7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21	14.4
시/군유지	55	37.7
사유지 매입	31	21.2

※ 사업지구별 다양한 토지소유형태 활용으로 중복집계

■ 총 사업비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별 총 사업비는 50~100억원을 투자한 사업지구가 34개소(5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는 2009년부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지침 상 제시된 지원한도에 따른 결과이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방비 투자비율을 높이거나 2단계 사업(연계사업)추진 또는 민간 자본 유치 등으로 총 사업비가 증액되었음을 확인함

- 50억원 이하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지구의 경우 기반시설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남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별 총 사업비]**

구 분	개소수	비율(%)	해당지역
50억원 이하	19	27.9	보은, 금산, 김제, 사천, 강화, 양구, 진천, 화순, 양주, 강원 고성, 제천, 청원, 고령, 충주, 괴산, 영주, 청송, 당진, 평택
50~100억원	34	50.0	음성, 서천, 구례, 울진, 여주, 양구, 예산, 진도, 봉화, 가평, 무주, 청도, 영양, 의령, 울주, 장성, 경남 고성, 홍성, 진안, 담양, 곡성, 문경, 산청, 신안, 진주, 창녕
100~150억원	11	16.2	영광, 이천, 함안, 익산, 장수, 영동, 천안, 광양, 영천, 거제, 남구, 옥천, 완주, 김천, 예천, 칠곡, 포항, 거창, 홍천
150억원 이상	4	5.9	안성, 상주, 고창, 합천

**■ 사업비 재원조달**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68개 지구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610,438백만원이며 재원조달 비율은 국비 41%, 도비 6%, 시·군비 45%, 민간자본 8%로 나타남
- 현 사업 시행지침 상 제시된 지원 비율(국비 50%, 지방비 50%)보다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업지구는 22개소(32.4%)이며 이는 사업부지 기반조성에 많은 투자, 민자유치 부진, 지원 대상시설 외의 시설조성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됨
- 민간자본의 투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지구는 안성(신두지구), 익산(서동요지구), 고창(상하지구), 합천(용주지구), 홍천(수탁사지구) 등 총 5개소(7.4%)로 저조한 실정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자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안성 신두지구	35,000	11,100	32	1,400	4	2,100	6	20,400	58
음성 원남지구	8,000	4,000	50	1,050	13	2,950	37		
서천 동부지구	6,600	3,300	50	990	15	2,310	35		
영광 불갑지구	11,085	4,300	39			6,785	61		
이천 어농지구	19,928	2,500	13	5,850	29	11,578	58		
보은 산대지구	5,000	2,500	50	1,250	25	1,250	25		
금산 천내지구	5,000	2,500	50	750	15	1,750	35		
김제 만경지구	5,000	2,500	50			2,500	50		
구례 광의지구	6,746	3,290	49			3,456	51		
상주 삼백지구	21,048	2,500	12	750	4	17,798	85		
울진 수산지구	6,340	2,500	39	750	12	3,090	49		
사천 서택지구	5,000	2,500	50			2,500	50		
강화 장화지구	5,000	2,500	50	1,250	25	1,250	25		
여주 연라지구	8,553	2,500	29	780	9	5,273	62		
양구 파로호지구	7,159	2,500	35	750	10	3,909	55		
진천 백곡지구	5,000	2,500	50	1,250	25	1,250	25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재원조달 - 표 계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자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예산 광시지구	5,900	2,950	50	885	15	2,065	35		
진도 윤림지구	8,822	4,156	47			4,666	53		
화순 유천지구	5,000	2,500	50			2,500	50		
봉화 내성지구	7,600	2,500	33	750	10	4,350	57		
함안 가야지구	10,652	4,600	43			6,052	57		
양주 도하지구	5,000	2,500	50	750	15	1,750	35		
가평 상천지구	6,688	2,500	37	750	11	3,438	51		
강원고성 어천지구	5,000	2,500	50	500	10	2,000	40		
제천 청풍지구	5,000	2,500	50	750	15	1,750	35		
청원 미래지지구	5,000	2,500	50	750	15	1,750	35		
익산 서동요지구	13,993	5,000	36			8,393	60	600	4
무주 애플스토리지구	8,220	4,110	50			4,110	50		
청도 신도지구	9,600	4,800	50	1,400	15	3,400	35		
영양 삼지지구	6,000	3,000	50	900	15	2,100	35		
고령 덕곡지구	2,990	1,450	48	435	15	1,105	37		
창원 주남지구	10,377	5,000	48			5,377	52		
의령 설매지구	5,800	2,900	50			2,900	50		
울주 상북지구	9,660	3,200	33			6,460	67		
충주 동량지구	5,000	2,500	50	750	15	1,750	35		
괴산 문광지구	5,000	2,500	50	750	15	1,750	35		
장수 두산지구	14,461	4,600	32			9,861	68		
고창 상하지구	30,000	5,000	17			5,000	17	20,000	67
장성 유평지구	6,000	3,000	50			3,000	50		
영주 부석지구	5,000	2,500	50	500	10	2,000	40		
청송 청송지구	5,000	2,500	50	750	15	1,750	35		
경남고성 대가지구	6,000	3,000	50			3,000	50		
합천 용주지구	15,300	4,600	30			7,500	49	3,200	21
영동 매천지구	10,000	5,000	50	1,500	15	3,500	35		
천안 동남지구	12,478	4,914	39	983	8	6,581	53		
홍성 홍양지구	7,030	3,500	50	700	10	2,830	40		
당진 합덕지구	5,000	2,500	50	500	10	2,000	40		
진안 단양지구	6,400	3,200	50			3,200	50		
광양 백운지구	12,553	5,000	40			7,553	60		
담양 학동지구	9,672	4,836	50			4,836	50		
곡성 영운지구	8,502	4,251	50			4,251	50		
문경 문경지구	8,100	4,050	50	500	6	3,550	44		
영천 청통지구	10,000	5,000	50	1,000	10	4,000	40		
거제 서상지구	12,700	5,000	39			7,900	62		
산청 특리지구	8,000	4,000	50			4,000	50		
남구 대촌지구	10,000	5,000	50			5,000	50		
옥천 묘목지구	10,000	5,000	50	1,500	15	3,500	35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재원조달 - 표 계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자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완주 덕천지구	10,000	5,000	50			5,000	50		
신안 안좌지구	9,000	4,500	50			4,500	50		
김천 오봉지구	10,000	5,000	50	1,000	10	4,000	40		
예천 백석지구	10,000	5,000	50	1,000	10	4,000	40		
칠곡 중지지구	10,000	5,000	50	1,000	10	4,000	40		
포항 봉계지구	10,000	5,000	50	1,000	10	4,000	40		
거창 대신지구	11,736	4,000	34	500	4	7,236	62		
진주 진양호지구	5,400	2,700	50			2,700	50		
평택 오성지구	1,800	500	28			500	28		
홍천 수탁사지구	12,545	4,000	32	800	6	5,200	41	2,545	20
창녕 함박산지구	6,000	3,000	50			3,000	50		
합계	610,438	247,307	41	39,423	6	276,363	45	46,745	8

■ 사업추진 단계별 주관주체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크게 계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관리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3가지 단계 모두 지자체가 주관주체를 담당하는 비율이 각각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시공단계에서는 지자체(52.2%)와 한국농어촌공사(46.3%)의 추진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계획 및 설계단계와 관리운영단계에서는 지자체의 비율이 각각 64.4%, 82.2%로 압도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임
- 민간기관의 참여는 관리운영단계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또는 계획·검토 중인 사업지구는 총 11개소(15.1%)이며 참여 중 또는 예정인 기관은 농협중앙회(안성 신두지구), CJ그룹(여주 연라지구), 해초여행사(청송 청송지구), (주)매일유업(고창 상하지구) 등이 있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영농조합법인, 지역축제위원회 등 지역주민 또는 단체(서천 동부지구, 제천 청풍지구, 고령 덕곡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단계별 주관주체]

구 분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관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계획 및 설계단계	47	64.4	25	34.2	1	1.4
시공단계	36	52.9	31	45.6	1	1.5
관리운영단계	60	82.2	2	2.7	11	15.1

※ 추진단계별 협업으로 주관주체 중복집계



나) 시설조성계획 및 현황

■ 조성테마 유형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특산물을 테마로 활용한 사업지구가 31개소(4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자연·휴양(29.4%)과 관련된 테마가 높게 나타남
- 농특산물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으로 기본적인 브랜드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휴양의 경우 수변, 정원·식물(연꽃, 수목 등), 테라피 등 경관 중심의 테마구현이 되고 있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조성테마 유형]

구 분	개 소	비 율(%)
농특산물	31	45.6
농업·농촌문화	7	10.3
자연·휴양	20	29.4
지역·역사자원	7	10.3
기 타	3	4.4

■ 시설별 사업비 투자

- 농촌테마공원의 지원시설은 크게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 등이 해당되며 세분화된 조사를 위해 기반시설, 체험 및 야외휴양시설, 기타위락시설, 판매·식음시설, 숙박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함
- 전반적인 시설별 사업비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국·도비 지원 기반시설이 44.3%로 가장 높으며 비슷한 비율로 국·도비 지원 체험 및 야외휴양시설(41.5%)이 그 다음 순을 차지함
- 민간자본을 도입한 시설의 경우 전체시설에 대한 투자비율이 8.5%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 민간사업자 참여가 미비한 실정임을 시사하고 있음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의 약 90%가 기반시설, 체험 및 야외휴양시설에 투입되거나 계획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농촌테마공원 원활한 수익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수익형 시설보다는 공원형 시설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냄
- 농촌테마공원이라는 명칭 상 공원으로 분류할 경우 도시공원법에 의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실질적인 민간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수익발생이 가능한 시설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함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별 사업비 투자]

구 분	국/도비 지원(%)					민간자본 도입(%)				
	기반	체험	위락	판매	숙박	기반	체험	위락	판매	숙박
사업비 투자 비율	44.3	41.5	3.5	1.4	0.8	0.5	4.2	0.4	1.2	2.2

### ■ 민간자본 유치 프로그램

- 민간자본을 유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지구는 총 5개소로 조사 되었으며 유형은 이용객 체험프로그램, 마케팅프로그램, 지역홍보프로그램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운영 중 또는 개장 예정인 지구는 테마가 적용된 체험이나 공간활용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중인 지구의 경우 농특산품을 기반으로 한 축제나 연계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민간자본 유치 프로그램 현황]

구 분	해당지역	프로그램 종류
운영 중개장 예정 지구	안성	치즈만들기, 가족교실(말체험 교실, 한우야 놀자)
	여주	케이블방송 올리브 채널 프로그램 촬영 : 마스터셰프코리아, 한식대첩
사업추진 중인 지구	제천	청풍황토섬축제
	진안	진안 농식품 6차산업화 조성사업
	평택	로컬푸드유통센터, 그린맵구축

### 다) 관리운영계획 및 현황

#### ■ 실질적인 관리운영 주체

- 농촌테마공원의 관리운영 주체는 현재 운영 중 또는 개장 예정인 지구(26개)와 사업추진 중인 지구(40개, 2개 지구 미응답) 모두 공공기관에서 직영하는 형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지자체이며 그 외에는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해당됨
- 민간위탁의 경우 현재 운영 중 또는 개장 예정인 지구는 전체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사업추진 중인 지구는 부분적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계획 및 검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부분적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경우 캠핑장·펜션 등 숙박시설, 식당카페테리아 등 판매·식음시설, 체험관·학습관 등 체험활동시설 등 수익형 시설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편임

[농촌테마공원의 실질적인 관리운영 주체]

구 분	운영 중·개장 예정 지구		사업추진 중인 지구		합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공공기관 직영	17	65.4	27	67.5	44	66.7
전체 민간위탁	6	23.1	3	7.5	9	13.6
부분 민간위탁	3	11.5	10	25.0	13	19.7

### ■ 관리운영 인원배치

- 현재 운영 중 또는 개장예정 지구(26개)의 관리운영 인원 배치는 2명 이하(1명인 지구가 6개소에 해당)가 11개소(42.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시설관리가 주된 역할로 파악됨
- 사업추진 중인 지구(42개)는 3~1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매표,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설 및 안내, 미화 등의 관리운영 역할을 부여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농촌테마공원의 관리운영 인원배치]

구 분	운영 중·개장 예정 지구		사업추진 중인 지구		합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2명 이하	11	42.3	8	19.0	19	27.9
3명 ~ 10명	10	38.5	20	47.6	30	44.2
11명 ~ 30명	2	7.7	7	16.7	9	13.2
31명 이상	1	3.8	2	4.8	3	4.4
계획검토중	2	7.7	5	11.9	7	10.3

### ■ 연간 평균 관리운영 소요비용

- 관리운영 소요비용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 일부 지구에서는 자산취득비, 기타 재료비 등을 추가로 책정하였음
- 농촌테마공원 68개 사업지구를 살펴보면 안성(신두지구)의 경우 다른 사업지구와 다르게 민간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직영하는 운영형태로 투자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 소요비용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운영 중인 지구에서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인건비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건비 중심의 관리운영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조사됨
- 안성 신두지구 외 연간 평균 관리운영 소요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울진 수산지구이며 그 다음으로 이천(어농지구), 여주(연라지구), 무주(애플스토리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가장 적은 비용이 투입된 곳은 화순(유천지구)임
  - 울진 수산지구의 경우 기 조성된 엑스포공원 내 복합적으로 농촌테마공원 시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의 관리운영비용 책정이 어려움
  - 또한 울진엑스포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산출하여 울진 수산지구의 관리운영 소요비용이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천 어농지구의 경우 관리운영비에 높은 자산취득비가 포함됨

[농촌테마공원 연간 평균 관리운영 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	자산취득	기타	소계	연 평균
안성 신두지구	5678.0				8756.0	14434.0	7217.0
음성 원남지구	35.0	29.0	240.0			304.0	101.3

[농촌테마공원 연간 평균 관리운영 소요비용 - 표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	자산취득	기타	소계	연 평균
서천 동부지구	28.8	30.0			3.0	61.8	20.6
영광 불갑지구	19.3	66.3	78.0			163.6	81.8
이천 어농지구	441.2	169.3	78.4	340.5	359.5	1388.9	694.5
김제 만경지구	10.0	10.0				20.0	10.0
구례 광의지구		38.2	35.0		3.8	77.0	38.5
울진 수산지구	1304.0	250.0	1121.0		70.0	2745.0	1372.5
사천 서택지구	20.0	6.4	40.0			66.4	22.1
여주 연라지구	158.5	73.6		35.0	50.0	317.1	158.6
양구 파로호지구	31.0	5.0				36.0	18.0
진천 백곡지구	12.7	16.3	2.4		11.9	43.3	43.3
예산 광시지구	9.0					9.0	9.0
진도 윤림지구	69.2	34.0	26.7		11.3	141.2	70.6
화순 유천지구		2.0			3.0	5.0	5.0
봉화 내성지구	69.0	65.0	69.0			203.0	67.7
함안 가야지구	28.0	12.0	30.0		3.8	73.8	73.8
무주 애플스토리지구	99.0	42.0	5.0			146.0	146.0
고령 덕곡지구	31.2	32.2	26.3			89.7	44.9
합계 평균	423.4	46.4	92.2	19.8	488.0	1069.7	536.6
비율	(39.6%)	(4.3%)	(8.6%)	(1.8%)	(45.6%)	(100.0%)	

※보은, 금산, 강화 지구는 미응답 상태 / 고성, 의령, 영주, 청송 지구는 개정 전 상태  
 ※기재된 비용은 개정 이후 총합

### ■ 관리운영비용 재원조달 형태

- 현재 운영 중 또는 개장 예정인 26개 지구를 대상으로 관리운영 재원조달 형태를 살펴본 결과 총 21개 지구에 행정예산을 집행한 공적 자금이 운영비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자체 운영수익에 의한 관리운영비용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지구는 안성 신두지구, 서천 동부지구, 고령 덕곡지구가 있으며 강원 고성 어천지구는 계획 중에 있어 총 4개 지구가 해당됨
- 이 중 서천 동부지구와 고령 덕곡지구는 기초적인 공공요금을 지원받음으로써 행정예산과 자체 운영수익을 복합하여 활용하는 재원조달방식을 시행하고 있음
- 농촌테마공원의 자체 운영수익은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숙박시설 운영, 시설임대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비용 재원조달 형태]

구 분	개소	비율(%)
도 및 사군비	21	84.0
자체 운영수익	4	16.0

### ■ 입장료

- 현재 운영 중 또는 개장 예정 지구(26개)와 사업추진 중인 지구(42개) 모두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는 사업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 또는 개장 예정인 지구 중 안성 신두지구(운영 중)와 영주 부석지구(개장 예정)에서 공원 전체시설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계획하였으며 음성 동부지구, 이천 어농지구, 여주 연라지구의 경우 현재는 무료입장이지만 향후 입장료 징수 계획이 있음
  - 안성 신두지구의 경우 공원 입장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이용을 패키지화하였으며 그 중 입장과 트랙터마차 탑승을 함께할 수 있는 팜2(성인 1인 기준 13,000원) 이용권이 가장 많이 판매
  - 영주 부석지구의 경우 공원 입장료를 4,000원으로 책정한 상태
- 사업추진 중인 지구에서는 괴산, 합천, 담양, 곡성, 신안 등 5개 지구에서 공원 전체에 대한 입장료 징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천, 합천, 진안, 문경, 거제, 광주 남구, 평택, 창녕 등에서 부분 유료화를 통한 이용료 징수를 계획하였음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무료이용 중심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차 진행됨에 따라 집객시설(목적형 공원이용)의 면모를 갖추어 유료화하는 계획이 증가하는 추세임

[농촌테마공원의 입장료]

구 분	운영 중·개장 예정 지구	사업추진 중인 지구
시설 전체 입장료	2	5
무료	21	17
부분시설 이용료	4	8
향후 유료화 계획	3	-

### ■ 주민참여 형태

- 농촌테마공원 68개 사업지구 중 주민참여 활동을 운영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곳은 총 39개소(개장 예정인 지구 19개소, 사업추진 중인 지구 20개소)임
- 주민참여 형태는 현재 시설관리운영에 고용되는 형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청소, 예초·제초 작업 등 환경미화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됨
- 기타부분으로는 일용직 고용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인한 관리주체로서 참여하는 형태가 있으며, 생활체육활동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있음

[농촌테마공원의 주민참여 형태]

구 분	운영 중·개장 예정 지구	사업추진 중인 지구
시설관리운영	13	9
마을연계·농특산물판매	7	18
기타	4	-

※ 농촌테마공원 중 복합적인 주민참여 활동 추진 지구 있음

### ■ 프로그램행사 운영 및 홍보 추진 현황

- 현재 운영 중 또는 개장 예정인 26개 지구 중 13개 지구에서 정기·상시프로그램 또는 행사이벤트를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있음
- 추진된 프로그램 및 행사이벤트를 살펴보면 농특산물 경작활용체험, 생활체육활동 또는 문화체험, 자연환경체험 등으로 분류됨
  - 농특산물 경작활용체험 : 안성 신두지구, 이천 어농지구, 울진 수산지구, 무주 애플스토리 지구, 고령 덕곡지구
  - 생활체육활동·문화체험 : 구례 광의지구, 사천 서택지구, 양구 파로호지구, 진도 윤림지구, 봉화 내성지구
  - 자연환경체험 : 서천 동부지구, 강화 장화지구
- 이천, 울진, 사천, 봉화 등 총 4개 지구에서 사업지구에 대한 홍보활동이 추진되었으며, 이 또한 해당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홍보에 대한 추진현황은 다소 미흡함

[농촌테마공원의 프로그램·행사 운영 및 홍보 추진 현황]

구 분		세부내용
안성 신두지구	프로그램·행사	도그쇼, 가족퀴즈쇼, 양털깎기, 호밀밭초원축제, 가을목동 페스티벌 등
	홍보	-
서천 동부지구	프로그램·행사	생태자원조사 및 물벼들길걷기, 생태해설프로그램
	홍보	-
이천 어농지구	프로그램·행사	도정체험, 작물경작 체험
	홍보	신문(4회), 방송(4회)
구례 광의지구	프로그램·행사	국제철인3종경기(시작점)
	홍보	-
울진 수산지구	프로그램·행사	딸기수확체험, 곤충모형만들기, 워터피아페스티벌, 송이축제
	홍보	워터피아페스티벌(신문/방송 년1회), 송이축제(신문/방송 년1회)
사천 서택지구	프로그램·행사	서택사랑공원 사천시민 건강걷기 대회
	홍보	신문/일간지(6회), 현수막(8회)
강화 장화지구	프로그램·행사	힐링음악회(2개월에 1회), 해넘이 행사(년 1회)
	홍보	-
양구 파로호지구	프로그램·행사	인문학 강연(매월 둘째 주), 철학의 집(4, 6, 8, 10월), 문학관 상시관람
	홍보	-
진도 윤림지구	프로그램·행사	삼별초국제학술대회, 강강술래체험, 회갑/칠순잔치, 한국스카우트 출정식
	홍보	-
봉화 내성지구	프로그램·행사	(사)한국예총봉화지회 색소폰공연, 그라운드골프대회, 체육대회, 백일장
	홍보	신문(10곳), 안동 MBC, 안동 MBC라디오
무주 애플스토리지구	프로그램·행사	홍로/부사 사과 체험행사, 사과파이만들기, 사과 활쏘기 체험
	홍보	-
고령 덕곡지구	프로그램·행사	대가야 영농체험, 신나는 예술여행(영화상영, 공연 등) 등
	홍보	-

라) 기타사항

■ **지자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 종합**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에서 사업추진 상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 여건 변동, 관리운영단계 사전준비, 사업 시행지침의 낮은 설명력, 민간자본유치 어려움 등이 나타남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3~5년 간 추진되는 장기사업으로 주변지역 여건 및 시대적 요구사항의 변화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사례가 발생함
- 농촌테마공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수익창출형 공원조성 기반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며 개발과 관리운영 담당부서의 별도 전담 지정 및 협조체계가 필요함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지침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이행절차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조건 완화 및 사전 연계방안 도입이 요구됨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의 건의 및 애로사항 종합]

구 분	주요내용
사업여건 변동	사업추진 협의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여부에 따른 사업비와 기간 변경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주변상황 및 연계사업 추진현황의 변화
	물가변동 또는 개선된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방식 및 도입시설 변경
	토지수용, 인허가 등 사업추진단계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준비 필요	준공 후 사업 담당부서의 유지관리 전문성 결여
	관리에산 및 관리인원 확보의 어려움
	관리운영방안을 수립 후 사업에 착수해야한다는 지침이 필요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설치 비용지원 필요
	유지관리 비용마련을 위해 수익성 사업의 기본적인 설치지원 필요
사업 시행지침 상 설명력 미흡	시행계획 완료 후 사업비(예산) 지원 필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행정절차 등에 관한 참고자료 부족
	사업 시행지침 상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방법에 대한 근거법령 불확실
민간자본 유치 어려움	부지확보 미지구 등 사업 시행지침 상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용어설명 필요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과 사업에 대한 감사사항의 대립 발생
	민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용도변경이 불가피함
	소득부분이 추가 되는 경우 사업추진 시작단계에서 민간 사업자와 연계 필요

### 3) 분석종합 및 시사점

#### ■ 지자체 중심의 공익추구형 사업추진으로 편중되는 현상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현재 농촌테마공원은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일반적인 공원관리 수준으로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있으며 시군 자체 재원을 운영소요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공익추구형과 더불어 수익창출형 및 복합형 등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대한 관리운영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정책적 검토를 통해 사업 다각화 도모 필요

#### ■ 지역 자원 홍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적 활성화방안 검토 필요

- 농촌테마공원은 투자 사업비 및 지역 내 입지역할 측면에서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용프로그램 및 행사, 홍보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운영 또는 계획 중인 사업지구에서 제시한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확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및 행사, 지자체 차원의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 자원 간, 농촌테마공원 간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잠재고객(외부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사업추진 기반 제시

#### ■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를 위한 사업지구의 애로사항 검토 필요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지침상 4개년 사업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사업 선정 년도를 시작으로 기한 내 준공된 사업지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사업 시행착오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마련 필요



## 나. 사업완료지구 현장모니터링 조사

### 1) 현장모니터링 개요

#### ■ 조사대상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완료 또는 추진 중인 68개 지구 중 2014년 3월 기준으로 조성이 완료된 사업지구 20개소를 대상으로 함

[농촌테마공원 현장모니터링 조사대상 - 사업완료지구]

구 분	개소	해당지구
수도권(경가인천)	3	안성 신두지구, 이천 어농지구, 인천 장화지구
강원권	1	양구 파로호지구
충북권	2	음성 원남지구, 진천 백곡지구
충남권	3	서천 동부지구, 금산 천내지구, 예산 광시지구
경북권	3	울진 수산지구, 봉화 내성지구, 고령 덕곡지구
경남권	2	사천 서택지구, 함안 가야지구
전북권	2	김제 만경지구, 무주 애플스토리지구
전남권	4	영광 불갑지구, 구례 광의지구, 진도 운림지구, 화순 유천지구

#### ■ 조사목적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완료지구의 시설조성 및 관리운영 현황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농촌테마공원사업 목적의 구현성, 추진내용의 계획성, 지역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관찰 조사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마련
- 사업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도출하고 기 조성된 20개 지구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 방안 및 향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적용 사항 수집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여건개선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 조사방법

- 20개 사업완료지구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및 운영 관계자와 직접 면담(대면 모니터링), 현장시찰 등으로 시설조성과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조사방법 활용

#### ■ 조사기간

- 현장모니터링 일정은 2014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3주의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사업지구 일정에 맞춰 현장방문 시찰 및 면담 추진
- 첫째 주(6월 16일~20일) 9개 지구, 둘째 주(6월 23일~27일) 10개 지구, 셋째 주(6월 30일~7월4일) 1개 지구 조사

## ■ 조사내용

- 현장모니터링 점검내용은 현황조사표 재확인과 대상지구의 물리적(입지 및 시설) 환경, 관리운영 현황 및 실태,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제안 사항, 향후 추진계획 및 효과 등으로 총 12개의 세부적인 문항을 구성함

[농촌테마공원 20개 사업완료지구 현장모니터링 점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현황조사표 재확인 (1차 서면자료)	현황조사표 결과 재검토 및 확인
물리적 환경 (입지 및 시설)	접근성, 주요 관광행태, 시설배치 현황 및 시설별 기능, 인근 도농교류시설 및 농촌체험자원 입지 현황 등
관리운영 현황 및 실태	시설운영 및 환경관리 현황,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현황, 주변지역(마을권역시설 등)과 연계 및 교류·협력 현황, 재무관리 현황
정책적·제도적 제안사항	농촌테마공원사업 추진 단계별 애로사항 및 개선 요청사항, 사업지구 운영관련 정책적 지원 또는 관리 요청사항
향후 추진계획 및 효과	대상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중장기적인 추진계획, 농촌테마공원 운영의 효과
기 타	제안사항, 건의사항 등

## 2) 사업완료지구 현장모니터링 결과 분석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사업지구별로 계획 상 적용된 테마 구현, 실질적인 공원 운영기반(공익, 수익 등)에 대한 사업추진 유형, 지역에서 농촌테마공원의 기능 및 역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사업추진의 주안점으로 분류 하여 살펴봄

### 가) 농촌테마공원의 테마 설정과 구현 방식

- 농촌테마공원 사업완료지구의 테마는 크게 농업·농촌과 관련된 농특산물, 생산·가공, 역사·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한 유형과 농업·농촌수원이 되는 저수지 및 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한 휴식·휴양 공간의 유형으로 구분됨
- 농업·농촌 관련 테마를 설정한 경우 1차 생산물인 농특산물을 테마로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쌀(이천 어농지구), 한우(예산 광시지구), 산양삼(화순 유천지구), 은어·송이(봉화 내성지구), 사과(무주 애플스토리지구), 옥미(고령 덕곡지구) 등이 해당함
- 그 외 생산·가공, 역사·문화 등과 관련된 테마는 체험목장(안성 신두지구), 친환경농업(울진 수산지구), 삼별초(진도 윤림지구) 등이 있음
- 저수지 및 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테마를 설정한 경우 수변 산책 및 경관 조망(금강 천내지구, 구례 광의지구, 사천 서택지구, 강화 장화지구, 양구 파로호지구, 진천 백곡지구), 캠핑(음성 원남지구), 생태(서천 동부지구, 영광 불갑지구), 연꽃(김제 만경지구, 함안 가야

지구) 등으로 세부 테마를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 휴식 및 휴양 위주의 공원시설로 이용하고 있음

[농촌테마공원 20개 사업완료지구 조성테마]

구 분		세부내용
농업농촌 관련 테마	농특산물	이천 어농지구, 예산 광시지구, 화순 유천지구, 봉화 내성지구, 무주 애플스토리지구, 고령 덕곡지구
	생산가공	안성 신두지구, 울산 수삼지구
	역사문화	진도 윤림지구
저수지 수변 관련 테마	수변 산책 및 경관 조망	금강 천내지구, 구례 광의지구, 사천 서택지구, 강화 장화지구, 양구 파로호지구, 진천 백곡지구
	캠핑	음성 원남지구
	생태	서천 동부지구, 영광 불갑지구
	연꽃	김제 만경지구, 함안 가야지구

- 농촌테마공원 테마구현 방식은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물 디자인 및 활용 기능에 집중한 경우가 대부분임
- 테마구현은 조성의 적용 외 공원이름에 활용되고 있었으며 사업완료지구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지구에서 테마가 명시된 공원이름을 사용하고 그 외 9개 사업 지구는 사업지구 지명 또는 기존 공원 및 권역마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농업농촌 관련 테마 적용 사업지구

- 명 칭 : 무주 애플스토리지구(무주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 26
- 조성테마 : 사과
- 주요시설 : 애플연구센터, 애플농장체험장, 휴게광장 및 야외전시장 등
- 운영형태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직영
- 특 징 : 사과나무분양으로 수익사업 진행 및 특수목적형 방문 유도  
사과나무 특화단지 조성으로 사과테마 명확



무주 애플스토리지구 조감도



애플연구센터 / 야외전시장

▶ 기존 사과재배지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과테마를 적용한 공간 조성

저수지 수변 관련 테마 적용 사업지구

- 명 칭 : 영광 불갑지구(불갑 테마공원)
-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방마로 363-49
- 조성테마 : 수변생태탐방
- 주요시설 : 수변생태단지, 주민참여시설, 농촌체험시설
- 운영형태 : 영광군 직영
- 특 징 : 수변산책형 공원시설 위주, 16m 물레방아 랜드마크  
특산물홍보전시판매장 조성(미운영), 불갑사권역센터 유치



영광 불갑지구 전경



농산물간이판매장 / 수변산책로

▶ 지역교류 거점시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테마의 명확화 필요

## 나) 농촌테마공원 운영기반에 대한 사업추진 유형

- 농촌테마공원 20개 사업완료지구 운영기반에 대한 사업추진 유형은 수익창출형, 복합형(부분 수익형), 공익추구형으로 구분됨
- 수익창출형은 대상지구 내의 전체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형이며 입장료 외 유료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방문객 유인요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자원 조달함
  - 20개 사업완료지구 중 안성 신두지구가 유일하게 해당함
- 복합형(부분 수익형)의 경우 부분적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징수하는 유형이며 대상지구 내 체험 및 학습관, 시설대관 및 임대, 체험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일정량의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운영비용을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곳임
  - 서천 동부지구(시설 대관), 이천 어농지구(시설 임대, 체험프로그램), 울진 수산지구(체험 및 학습관), 진도 윤림지구(시설 대관), 무주 애플스토리지구(시설 임대), 고령 덕곡지구(시설 대관, 체험프로그램) 등이 해당함
- 공익추구형은 대상지구 전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이며 다른 일반 공원형 시설과 같이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공공 편의 및 휴식시설로 이용되고 공원 관리운영비용을 해당 지자체 행정예산으로 모두 집행하는 사업지구가 해당함

[농촌테마공원 20개 사업완료지구 운영기반에 대한 사업추진 유형]

구 분	세부내용
수익창출형	안성 신두지구
복합형 (부분 수익형)	서천 동부지구, 이천 어농지구, 울진 수산지구, 진도 윤림지구, 무주 애플스토리지구, 고령 덕곡지구
공익추구형	음성 원남지구, 영광 불갑지구, 금산 천내지구, 김제 만경지구, 구례 광의지구, 사천 서택지구, 강화 장화지구, 양구 파로호지구, 진천 백곡지구, 예산 광시지구, 화순 유천지구, 봉화 내성지구, 함안 가야지구

- 농촌테마공원 20개 사업완료지구 중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추진 및 운영 중인 안성 신두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해당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며 수익보다는 공원으로서는 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남

수익창출형 사업지구

- 명 칭 : 안성 신두지구(안성팜랜드)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 조성테마 : 즐거운 체험목장
- 주요시설 : 체험목장, 중앙광장, 승마센터, 그림같은초원, 식당가 등
- 운영형태 : 농협중앙회 직영
- 특 징 : 식당가를 제외한 시설 조성 구역 전체 입장료 징수  
가축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유료)

▶ 조성테마 및 사업목적 구현에 대한 사업의식이 강함



안성 신두지구 안내도



그림같은초원 / 식당가

공익추구형 → 복합형 사업지구

- 명 칭 : 음성 원남지구(원남 테마공원)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934
- 조성테마 : 수변캠핑
- 주요시설 : 캠핑장, 수변산책로, 연꽃습지, 광장, 교량 등
- 운영형태 : 음성군 직영
- 특 징 : 무료이용의 공공휴양시설로 운영(수변캠핑장 및 산책로)

▶ 효율적 시설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안 검토 중



캠핑장 / 교량

연꽃습지 / 주차장

다) 농촌테마공원이 가지는 지역 내 기능 및 역할

- 농촌테마공원 20개 사업완료지구가 해당지역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 및 역할을 살펴 보면 주변 농촌체험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지역 도농교류 중심시설 유형과 타 사업과 연계추진을 통한 지역관광 및 교류사업의 부분적 이용 시설 유형으로 구분됨
- 지역 도농교류 중심시설 유형의 경우 다양한 집객시설을 갖춘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화, 지역의 체험마을 및 관광지와 MOU 체결을 통한 지역교류협력의 교두보효과 등 지역 내 거점시설의 기능 및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안성 신두지구, 이천 어농지구가 대표적임
- 타 사업과 연계추진을 통한 지역관광 및 교류사업의 부분적 이용 시설에 해당하는 유형의 경우 지역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보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복합화, 다양한 부처사업을 유치한 대규모 개발, 농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곳으로 울진 수산지구, 김제 만경지구, 양구 파로호지구가 해당됨
- 대부분의 농촌테마공원은 하드웨어기반시설 조성중심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시설 활용 및 관리운영에 대한 효용성이 다소 부족하여 농촌관광의 거점역할보다는 부분적인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 자리매김 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도농교류 중심시설 유형 사업지구

- 명 칭 : 이천 어농지구(이천농업테마공원)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
- 조성테마 : 쌀(농업농촌)
- 주요시설 : 경작지, 쌀문화관, 쌀먹거리촌, 숲체험존, 치즈학교 등
- 운영형태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 특 징 : 쌀·농업을 활용한 집객시설형태의 공원조성  
지역 농경문화 또는 관광시설과의 MOU체결로 활성화 노력

▶ 지역자원 연계협력으로 활성화를 도모한 반면 쌀 테마 구현의 보완 필요



이천 어농지구 마스터플랜



환경조형물 / 토종작물원

타 사업과 연계한 부분적 시설 유형 사업지구

- 명 칭 : 울진 수산지구(울진엑스포공원)
-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친환경엑스포로 25
- 조성테마 : 친환경농업
- 주요시설 : 광장, 어울림마당, 농문화체험장, 환경조형물, 동물농장 등
- 운영형태 : 엑스포공원사업소(군 산하조직) 직영
- 특 징 : 기존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공원 주행사장 공원화  
기존 시설과 농촌테마공원 시설의 사업경계 모호



울진 수산지구 마스터플랜



환경조형물 / 토종작물원

▶ 복합적인 관리운영으로 집객력과 공원 역할의 시너지 효과 발생

### 3) 분석종합 및 시사점

#### ■ 자원 중심의 실속 있고 다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조성테마 구현에 대한 권장 필요

- 농촌테마공원 사업완료지구는 농업·농촌의 생산물, 자연, 문화사회자원 등을 경험하고 조망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으며 시설물 디자인 중심으로 테마 구현이 이루어짐
-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볼거리, 배울거리, 놀거리, 쉴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조성테마 설정 및 구현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검토가 필요함

#### ■ 농촌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공원 운영기반 유형 구분 필요

- 대부분의 사업완료지구는 공익추구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합형의 경우도 공원입장을 무료로 하고 있어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소요재원에 대한 행정 의존 등 재정적 자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사업 추진 중에 있거나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지구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운영 소요비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 조성된 사업지구는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 지역에서의 농촌테마공원 기능 및 역할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준 마련 필요

- 현재 농촌테마공원은 지역 내 농촌체험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지역 도농교류 거점시설 이거나 타 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계획의 부분시설 등의 기능이 부여되고 있음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점시설로 운영할 경우 집객력을 강화해야 하며 종합계획 부분시설로 추진할 경우 연계성에 중점을 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래 지향적 계획수립을 유도하는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정책사업 가이드라인 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

### 가. 사업유형화 관련 사례

#### 1) 연안유희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 친수공간조성사업 중 자연형성지(공유수면), 국·공유지 등 연안유희지를 활용하여 국민여가·휴양시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연안휴양시설의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연안유희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연안유희공간의 위치, 주변여건 및 해역별 특성에 따라서 해양리조트형, 휴양요양형, 어촌체험형, 해양생태형, 레포츠형(해양, 항공), 해양문화형으로 구분함
- 시설유형별로 배치 및 위치, 규모 및 형태, 재료 및 색채 등 세 가지 항목에 따른 조성지침을 제시함
- 유형별·해안별 차별화된 연안휴양시설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가 가진 특성과 이용자의 이용특성으로 분류하여, 통일성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 2013년 학교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안전행정부)

- 학교숲의 다양한 기능을 최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학교숲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함
- 학교숲 조성 시 자연성 확보, 기능성 실현, 교육성 강화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제시함
- 학교숲은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옥외 환경개선 및 녹지량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함
- 학교숲 조성대상지의 특성과 이용목적에 따라 유형별로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함

[2013년 학교숲 조성사업 시행지침 유형]

구 분	세부내용
경계형숲	공동경계숲, 단독경계숲
근린녹지형숲	비탈숲, 아외숲, 모퉁이숲, 미래숲, 화단숲
환경조절형숲	소음방지숲, 시각차폐숲, 기후조절숲, 중정원
전문학습원숲	학습원, 화목원, 향기원, 식물원 또는 수목원
역사문화형숲	학교전통숲, 문화유적숲



## 나. 추진단계별 지침수립 관련 사례

### 1) 저탄소 녹색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 연구(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한 감축하고 기온상승, 물 부족, 생태계 변화, 기상재해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관광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 가이드라인은 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온실가스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과 기준, 세부 고려사항 등 각 단계에서의 해당 지표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 연구 사업추진 과정]

구 분	세부내용
입지선정단계	자연 및 역사문화 보존지역 입지제한, 생태녹지축 고려, 지형 및 지세 고려, 지역교통 체계 고려, 신재생에너지 도입여건 고려,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고려, 개발제한구역 고려,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고려
계획수립단계	토지이용(지역순응형 계획 수립, 원형보존 녹지 설정, 아름다운 경관 조성, 집약적 공간구조 형성, 녹지체계 구축, 바이오탑 및 생태이동통로 조성, 절성도 최소화 및 생태복원, 탄소저감 식재계획 마련, 일조량, 채광 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 바람통로 확보, 토지적성평가 도입 용도배분), 교통동선(친환경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이용 제고, 자전거도로 시스템 구축, 보행자 도로 조성, 친환경 주차장 조성, 친환경 교통 수단 도입, 무장애 이용시설 조성, 정온환경 조성), 에너지 및 자원순환(신재생에너지 도입,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에너지 절약 가로시설물 설치, 에너지 절약 건축물 설치, 친환경 건축물 설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탄소배출 관리계획 작성, 환경 친화적 하수처리, 우수 활용, 중수도 도입, 투수성 포장 확대, 폐기물 재활용), 순환경제(장기체류 관광 유도, 지역 농특산물 활용, 지역주민 참여 확대, 문화관광 녹색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고용, 자연산업 연계성 강화, 어메니티자원의 활용)
공사시행단계	공정단축 저탄소공법 확대, 저탄소 자재 사용, 건설 자재·폐기물 재활용, 저탄소 건설장비 사용,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표토의 보전 및 재활용)
운영관리단계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 작성, 온실가스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유도, 저탄소 녹색행사 개최, 자유로운 자전거 이용시스템 운영, 환경경영 유도, 기후변화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시행, 친환경 관광활동수칙 제정, 탄소배출 상쇄프로그램 도입,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대책 수립, 기상재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2)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광자원 개발 과정에서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가이드라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은 관광자원을 이용·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자연의 보전과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발방식으로 정의함
-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은 자연의 보전과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관광자원 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환경친화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성과 방법을 권고하는 것으로 정의함
- 통합 가이드라인(안)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보전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강제적 권고사항과 동시에 '관광분야 전략환경 영향평가 환경성 제고 가이드라인'의 의무적 규제지표를 포함하며, 세 가이드라인의 환경, 사회문화, 경제 항목을 모두 포괄함
- 입지선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각 단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을 권고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 주체가 사업추진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안) 제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안) 연구 사업추진 과정]

구 분	세부내용
입지선정단계	대상지 입지 여건 검토(입지선호조건, 입지회피조건), 대상지 부지 확보
계획수립단계	기본구상, 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토지이용, 경관, 교통동선, 건축물 및 시설물, 식재, 지역사회), 관리운영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사업시행단계	시공관리, 준공관리
운영관리단계	관광객 관리, 시설운영 관리, 지역사회 협력

## 다. 사후관리 및 평가사항 관련 사례

### 1)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안전행정부)

-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함
-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사항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 및 사업 추진실적 평가내용 등을 제시함
- 중간지원기관
  -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1개 시·도 또는 1개 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복수의 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 가능함
  - 중간지원기관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신규 마을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등을 지원함

- 중간지원기관의 평가는 중간지원기관에 부여된 역할에 대해 정략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중간지원기관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함
- 중간지원기관의 평가 : 정량평가(컨설팅, 교육, 재능나눔, 홍보, 관리, 만족도), 정성평가(업체능력, 특화성)
- 자치단체장의 지도 및 점검
  -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마을기업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은 정기 지도 점검 및 특별 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2차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 및 사업의 진척도, 사업비 집행율,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안행부에 제출함
  - 매년 1월 중 사업성과 보고를 위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실시 후 부적격 사업비가 발견될 시 전액 환수 조치함
  - 최종평가 결과는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와 함께 시·도에서 취합하여 안행부에 제출함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자부담 예산의 집행율,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상태, 예산 변경의 적법성 및 적정성,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중간지원기관을 활용한 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자치단체장의 자체적인 점검 등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농촌테마공원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포괄보조사업 체계 내에서 지역의 문화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목적형 문화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함
- 광특회계 포괄보조금제도, 문화체육관광 기능 군으로 분류된 사업현황, 문화인프라 사업 추진현황 등 보조금사업으로 문화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포괄보조금 신청 전 요구하는 사전검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지역민의 의견수렴방법 및 결과, 예산계획의 적절성, 성과목표치의 적절성 등 계획개요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검토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의 추진성과평가 지표를 토대로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사업결과와 지역 기여도로 구분하여 사업결과 평가는 목표대비 성과달성도에 대해 정량평가를 하고 지역 기여도는 지역발전기여도 및 확산효과 등 정성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과평가 항목 : 계획서 검토서(안), 사업추진실적 정성평가(안), 사업 경과 정량평가지표(안), 지역기여도 정성평가지표(안)
-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추진조직을 구성하거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 계획과 별도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 등의 성과에 대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농촌테마공원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계획서 검토내용 및 평가지표를 참조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라. 정책사업 가이드라인 관련 사례조사 검토결과

### 1) 연안유희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 연안유희공간 유형별 시설조성 지침 검토결과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등 3가지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으며, 배치와 위치의 경우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하고, 규모 및 형태의 경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접근성·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재료 및 색채의 경우 친환경 재료를 활용하여 밝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2) 2013년 학교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안전행정부)

- 학교숲 조성사업의 경우 조성대상지의 특성과 이용 목적에 따라 유형별(경계형, 근린 녹지형, 환경조절형, 전문 학습원, 역사 문화형)로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공원 조성에 따른 유형화를 참조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음

### 3) 저탄소 녹색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 연구(문화체육관광부)

- 저탄소 녹색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온상승, 물 부족, 생태계 변화, 기상재해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 단계별 지표에 따라 시설조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4)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안) 연구에서는 관광자원 개발 과정에서 자연 환경 및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환경친화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가이드라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5)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안전행정부)

-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중간지원기관을 활용한 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자치단체장의 자체적인 점검 등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농촌테마공원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에 참고

### 6)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및 검토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촌테마공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계획서 검토내용 및 평가지표를 참조하여 가이드라인 수립방향 제시

## 3. 농촌테마공원 사업추진 현황분석 시사점

### ■ 다양한 지역 자원의 한정적 활용 및 구현에 대한 개선 방향성 정립 필요

- 농촌지역에 분포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조성테마 구현이 미흡하고 일반공원 형태의 편중된 사업추진이 많이 진행됨
- 농촌테마공원의 개념 및 정책적·행정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의 재정립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자구의 여건에 맞는 관리운영단계에 대한 사전 준비 유도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하드웨어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리운영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게 되어 개장 후 실질적인 관리운영단계에서 많은 애로사항 발생함
- 사업초기단계부터 관리운영을 염두에 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운영기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참여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농촌테마공원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구체화 필요

- 현재 농촌테마공원은 사·도·자·울·편·성·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참고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사업추진단계, 관리운영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 역할, 세부적인 작성요령 등이 제시되어 있는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03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1.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활성화 방안
2. 운영 활성화 방안의 적용 사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1.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활성화 방안

## 가. 운영 활성화 방안 개요

### ■ 시설의 다각적 활용 및 관리운영 전문성 강화 등 관련 사례를 통한 활성화 방안 검토

- 농촌테마공원은 조성 이후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활동이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계획 및 시설 조성 단계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역량을 요하는 것이 운영 및 사후관리 단계임
- 또한 행정주도 관리운영 체제의 농촌테마공원은 방문객 요구에 따른 관리운영상의 변화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 따라서 지역에서 쉽게 적용 가능하고 주민 및 마을공동체 등과 관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검토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활성화 방안]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사례
① 프로그램 및 행사 도입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차원의 홍보마케팅 강화</li> <li>• 웰촌, 농협 등과 연계하여 홍보시스템 구축</li> <li>• 프로그램 및 행사 유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 한방엑스포공원의 '아름다운 주말장터'</li> <li>• 일본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의 직거래장터 '아침시장'</li> </ul>
② 지역주민 및 공동체 창업 공간 활용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아이템 공모사업 개최</li> <li>• 민자유치 프로그램 장려</li> <li>• 설계시공단계부터 관리운영 참여자와의 계약체결 권장</li> <li>• 이용가능 토지 자율 선정 사유로 인허 등 사업시행자 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조건을 완화(지역기업기관 우선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 창업매장 운영을 위한 우수 아이템 공모(한국도로공사)</li> <li>•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청년 야시장'</li> <li>•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조성</li> </ul>
③ 타시설및주변마을과 연계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적마을만들기,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마을 및 농촌관련 시설과 농촌테마공원 연계</li> <li>• 지역 협단체와의 MOU체결을 통한 연계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주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문화벨트 협약</li> <li>• 타겟 마케팅을 활용한 제주 물사랑 홍보관 운영 활성화</li> </ul>
④ 운영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초청교육, 견학, 컨설팅 지원으로 관리운영자의 역량강화</li> <li>• 농촌테마공원 서비스운영매뉴얼 제작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인 인식변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구미중앙시장'</li> <li>• 관리운영자의 역량강화교육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교육'</li> </ul>

## 나. 유형별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사례

### 1)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활성화 방안

#### ■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주도의 모임교류 장소 활용을 통한 방문객 교류 활동 증대

- 농촌테마공원은 지역의 농업·농촌을 테마로 한 공공공간으로서 사업지구의 특성 및 고유 테마에 이질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역 축제 및 마을행사, 지역 사회단체 등의 모임·행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 가능
- 이러한 모임·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은 별도의 방문객 유치 및 마케팅 노력 없이도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군 직영의 사업지구에서 적용·도입 하기에 용이
- 제천 한방엑스포의 ‘아름다운 주말장터’ 및 일본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의 ‘아침시장’ 등이 기존시설을 주민 중심의 모임·교류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활성화 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제천 한방엑스포 공원의 활성화 방안 사례, ‘아름다운 주말장터’

##### (1) 시설 개요

- 2010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주 무대였던 제천 한방엑스포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주말장터’ 장소로 활용을 통한 시민 참여 및 이용 유도

#####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시민들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주말장터
  - 2014년 제천시의 각종 시민사회단체로 ‘아름다운장터 운영협의회’ 구성,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엑스포공원에서 주말장터 개최
  - 주요 프로그램은 벼룩시장, 먹거리 장터, 프리마켓, 재능기부 공연 등

##### (3) 운영 방법

- 시민친화적공간으로 재탄생
  -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재사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 대안적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나눔과 경제교육의 장
- 협동의 틀을 마련한 협의회구성
  - 학부모연합회, 자원봉사센터, 희망나눔콜센터 등 민간 사회단체를 망라한 협의회 구성과 열린 구조가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냄
  - 단순한 아나바다식 장터를 넘어 건강한 여가문화의 장으로 이끔



아름다운 주말장터 모습



아름다운 주말장터 포스터

- ▶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의미 있는 지역행사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전한 소비문화 및 여가공간으로 활성화
- ▶ 주말장터의 성공은 정체되어 있는 지방 소도시 이미지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계기가 됨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 직거래장터 활성화사례, '아침아시아치시장'

(1) 시설 개요

- 1984년 농업의 진흥을 위해 만들어졌던 곳으로 경작지가 있던 곳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가 줄어들면서 생긴 여유공간에 공원적 요소를 접목하여 조성
- 공원 전체규모(7.2ha)중 논 1,200㎡, 밭 2,000㎡, 나머지 공간은 연못, 전통 가옥, 학습체험공간, 꽃 정원, 레스토랑, 퇴비장 등 조성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직거래 장터마련을 통해 공원 활성화
  - 공원에서 생산한 농작물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규모 도시농업을 통한 농작물을 시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터 마련
  -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오전 9시~11시까지 열리며 농약과 화학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만 판매
- 다양한 생태체험과 교육진행
  - 시민들은 언제든지 농업 참여 가능
  - 모내기체험, 채소파종 등 시기에 따른 생태체험학습 진행



아침시장 전경

(3) 운영 방법

- 전문업체의 민간위탁운영과 지속적인 구청의 지원
  - 매년 5년 단위로 민간업자를 선정, 현재 농사 전문 3개의 업체를 선정해 공동으로 관리
  - 구청은 공원관리를 위해 관리 비용의 90%를 지속적으로 지원



아침시장 지역상인·방문객 모습

▶ 지역 내 소규모 도시농업을 통한 농작물을 시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마련함으로써 공원의 활성화

## 2) 지역주민 및 공동체 창업 공간으로 활용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 ■ 지역주민 및 민간사업자의 창업기회 부여를 통한 공원시설 운영 활성화

- 지역주민 및 민간사업자에게 농촌테마공원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창업을 돕고 지역 공간·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시장경제활성화에 도움
- 창업 아이템 공모사업을 개최하거나 민자유치프로그램을 장려하여 다양하고 이색적인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가능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 창업매장 운영을 위한 우수 아이템 공모' 와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과 청년몰의 '청년야시장' 은 지역공간의 일부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내어줌으로 청년실업해소와 함께 지역 공간 활성화와 대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한 사례임
- 또한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조성' 사례는 기존 지역에 존재하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조성한 사례로 볼 수 있음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 창업매장 운영을 위한 우수 아이템 공모 사례 '꿈꾸는 휴게소'

(1) 시설 개요

- 전국 9개 고속도로휴게소에 29개의 청년창업매장 공간 제공  
-하남 만남의광장, 횡성(휴게소 방향 강릉), 화성(목포), 여주(강릉), 망향(부산), 문경(양평), 여산(순천), 칠곡(서울), 진영(순천)휴게소에 각각 위치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창업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 기존휴게소 메뉴와 차별화되는 간식 또는 식사류, 휴게소에 적용이 가능한 공예, 그림(만화), 패션 소품 등 제작·전시·판매

(3) 운영 방법

-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인테리어 비용, 초기 임대료 면제 등 지원
- 운영실태 및 고객반응을 살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식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청년창업매장 오픈식

▶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청년 실업 해소에 일조하고 새로운 휴게소 문화를 창출하여 창조경제휴게소 구현

마을만들기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사례 진안마을만들기지원센터 조성

(1) 시설 개요

-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구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를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들이 이용하는 콤플렉스로 조성
- 총 부지는 약 7,300㎡이며 분청사 건물 등 8개의 건축물 분포  
-이들을 리모델링하여 모두 15개의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들이 입주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위탁받은 운영주체는 마을·단체·주민에 대한 수시 상담, 행정 위탁사업, 법인 자체 사업(포럼, 워크숍, 교육), 지원센터 입주단체 지원 등
- 부대사업으로 지원센터 시설 관리, 마을만들기 행정 협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등

(3) 운영 방법

-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은 군에서 지원하고 이후 운영 일체는 민간에 위탁
- 군에서는 해당 민간위탁업체에 공무원 1인(마을만들기 팀)을 파견하여 행정지원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입주 단체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진안마을(주), 마을축제조직위, 마을간사협의회, 진안고원길, 한일교류협회, 진안자활센터, (사)농촌으로가는길, 진안군평생학습센터, 뿌리협회
- 농촌창업관련  
- 적정기술연구회, 로컬컴퓨터, 작업장학교, (유)마이크린, 자전거동호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전체공간 활용구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진안마을(주)

▶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공간 및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유휴화된 시설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공동체를 위한 기능 복합화 콤플렉스 조성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청년야시장'

(1) 시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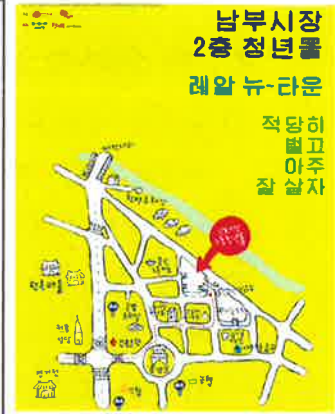
- 남부시장은 1473년 우리나라 향시의 효시로 태동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호남지역 대표 시장이지만 고객과 상인의 90% 이상이 고령화되고 대형 마트가 등장하는 등 전통시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김
-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세(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청년 장사꾼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
  - 청년 장사꾼들이 '전통시장의 부활', '청년 실업 대안의 장' 을 마련코자 청년몰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체 행사를 진행하며 발전을 거듭함
  - 총 10개 건물 중 유통인구가 적어 빈 점포가 많던 6동 2층에 '청년몰' 조성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청년몰 협동조합은 '쁘레따쁘레따 인 남부 캐시몹', '청년 야시장' 등의 자체 행사를 진행
  - 청년야시장은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
  - 매 회 야시장 셀러는 30팀으로 먹거리, 베틀시장, 창작품, 재능, 체험 등의 분야별 참가자 모집
- 상인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시장체험프로그램, 음식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체험의 현장 마련
  - 시장체험프로그램(인디푸드교실, 남부시장 미션투어, 나도 장사꾼), 음식 프로그램(머핀케익만들기, 핸드드립커피체험, 치킨커틀렛·피클만들기 등), 디자인&기타 프로그램(노트만들기, 예코백만들기, 스티커만들기, 악세서리만들기 등)
  - 화요일~토요일 12시~18시 운영

(3) 운영 방법

- 창업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뽑힌 입주자들에게 1년간 임대료지원
  - 1인 점포가 대부분이며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의 운영자가 주를 이룸



**<시장체험프로그램>**

**인디푸드 교실**  
₩10,000 2시간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 시장상인들과 교류하며 우리 시장의 정을 느끼고 제철재료를 이용한 건강할 먹거리에 대해 다시 생각 해드립니다.

**남부시장 미션투어**  
₩5,000 1시간  
2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재미있는 미션을 통해 여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남부시장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갑니다.

청년몰 시장체험프로그램

- ▶ 젊은 상인과 고객들을 유입하여 시장의 내발적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지역문화공간으로 창출
- ▶ 시장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와 시장 내 청년 창업으로 청년실업 등의 문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연결시켜 건강한 지역을 만들



[ 청년몰 '청년야시장' ]



### 3) 타 시설 및 주변 마을과 연계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 ■ 기타 관광시설 간 연계·협력을 통한 운영 활성화 공동 홍보마케팅 효과

- 농촌테마공원은 지자체 차원의 주요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의 기존 관광거점 및 도농교류 시설과 체험·교육·전시·홍보·장소제공 등을 탄력적으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려 가능
- 연계·협력체계 구축은 협력주체 간 역량 보완, 사업추진 노하우 공유, 상호 홍보 여건 제공,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객 교류 등으로 시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민·관·산·학 등 다양한 협·단체가 참여 가능함
- 제주 물사랑 홍보관의 ‘타겟 마케팅’ 및 남양주시의 ‘문화벨트 협약식’ 등이 주변지역 및 관광자원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활성화 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제주 물사랑 홍보관 활성화 방안 사례, ‘타겟 마케팅’

##### (1) 시설 개요

- 홍보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물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
- 주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

#####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타겟 마케팅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견학장소 적극 제공
  - 인근 학교의 경우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활동 전개
- 주변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 홍보관 인근의 탐라문화광장, 김만덕기념관 등을 연계한 관광루트 설정



물사랑 홍보관 견학모습



물사랑 홍보관 견학모습

- ▶ 어린이 및 청소년층을 집중 유치하여 교육·체험 장소로 자리매김함과 더불어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관광거점으로 활성화

#### 남양주시 문화시설 활성화 방안 사례, ‘문화벨트 협약식’

##### (1) 시설 개요

-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관내 다른 문화시설과 업무협약을 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관광 진흥 도모

#####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공동참여
  - 실학박물관, 남양주종합촬영소,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다산유적지, 몽골 문화촌, 남양주역사박물관 등 6개 기관 참여



남양주 문화벨트 협약식

-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공동 협력하고 적극적인 연계홍보를 진행함으로써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4) 운영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 ■ 사업운영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컨설팅을 진행하여 운영의 내실화 도모

- 농촌테마공원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개장 이후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으로써 운영주체의 역량강화 및 의식개선 등을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운영주체의 교육·컨설팅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역량강화를 토대로 의식제고 및 정보공유를 통한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리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
- 구미 중앙시장의 '상인교육을 통한 의식변화' 및 관리운영자의 역량강화교육의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교육' 등이 사업운영주체를 교육·컨설팅 함으로써 활성화 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구미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사례, '상인교육을 통한 의식변화'

###### (1) 시설 개요

-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 경영의식 향상과 고객유치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지원
- 쾌적한 전통시장 이미지 만들기 운동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형성

######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친절교육 및 상인대학 운영, 친절서비스 워크숍, 시장상인 역량강화 등
- 고객 불만 해소법, 시장별 특화상품 개발, 경영시스템 개선 교육 및 성공 사례 발표, 선진시장 견학, 현대인 소비성향 등 상인들의 영업역량 활용

###### (3) 운영 방법

- 지자체 차원에서 정기적인 지원 교육 진행 및 기회 제공



구미중앙시장 상인대학



구미 전통시장 상인 대상 친절교육

▶ 상인 역량강화 및 영업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상인 자립 및 영업의식 개선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

##### 관리운영자의 역량강화교육 사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교육'

###### (1) 시설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교육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의 업무수행능력과 기획력, 마을관리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농어촌사업 및 사무장제도의 이해, 갈등관리비법, 퍼실리테이션워크숍, 체험마을과 스토리텔링 등 체험의 방법론과 체험객 접객
- 홍미유발 체험진행, 사람유형에 따른 돌방상황 대처 등 체험객 관리요령 습득

###### (3) 운영 방법

-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체험마을 사무장교육

▶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지역 사무장들의 의식제고 및 정보공유 등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권역의 활성화 도모

## 2. 운영 활성화 방안의 적용 사례

### 가. 농촌테마공원 유형별 운영 활성화 방안 적용

#### ■ 운영 중인 사업지구의 시설 및 운영 특성에 따른 활성화 방안 검토제시

- 현재 운영 중인 농촌테마공원(20개 지구, 2014년 기준) 시설이 입지한 환경 및 관라운영 중인 시설, 운영방식 등에 따른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하여 사업지구 유형화
- 20개 사업지구의 시설 및 운영 특성 검토 결과, 무주 애플스토리와 같은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테마공원, 이천 어농지구와 같은 전시 및 체험시설 중심의 농촌테마공원, 음성 원남지구와 같은 하천·저수지 중심의 수변형 농촌테마공원으로 유형 구분
- 각 유형별 대표 사업지구의 시설 현황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의 유지·활용 다각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관련 사례 검토·제시

[기존 운영 중인 농촌테마공원의 유형별 활성화 방안 사례 적용]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사업지구
①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활용한 농업농촌 체험형 농촌테마공원	• 농지, 과수원, 목장 등 농축산업 생산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 및 가공, 서비스의 선순환 체계를 사업지구 내 구현하는 형식의 농촌테마공원	• <u>무주 애플스토리지구</u> • 안성 신두지구
② 전시 및 체험시설 중심의 시설형 농촌테마공원	• 지역 교유의 농업농촌을 테마로 한 전시 및 홍보, 체험 등 공원 시설 내 적용하여 운영 중인 농촌테마공원	• 고령 덕곡지구 • 양구 파로호지구 • 울진 수산지구 • 진도 윤림지구 • 봉화 내성지구 • 예산 광시지구 • <u>이천 어농지구</u>
③ 하천·저수지 주변의 수변공원형 농촌테마공원	• 지역 내 저수지 및 하천, 해안 등의 수변 환경을 활용한 휴식·휴양시설로서 산책, 야영 등의 세부시설을 갖춘 농촌 테마공원	• 구례 광의지구 • 김제 만경지구 • 서천 동부지구 • <u>음성 원남지구</u> • 진천 백곡지구 • 금산 천내지구 • 사천 서택지구 • 영광 불갑지구 • 인천 장화지구 • 함안 가야지구
④ 기 타	• 기존 산림활용 및 자연휴양형 농촌테마공원	• 화순 유천지구



## 나.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적용 사례

### 1)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 무주 애플스토리지구 사례

#### 가) 사업지구 시설 및 운영 현황

##### ■ 부분적인 유휴공간의 활용도 제고 및 이용대상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무주 애플스토리지구는 대단위 사과나무단지를 활용하여 사과생산과 관광을 결합한 농촌 테마공원으로 사과나무를 분양하여 분양계약자의 상시 방문을 유도하는 특수목적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과단지 자체가 집객시설 역할을 하고 있음
- 테마공원의 중심 시설인 애플연구센터의 연구·체험관 활용이 저조하여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분양계약자 중심의 이용공간인 애플농장체험장(사과재배지)에 대한 부수적인 활용방안 제고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필요

##### [무주 애플스토리지구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공원명칭	•무주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위 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 26
규 모	•112,003㎡ (건축 연면적 2,450㎡)
조성테마	•사과
주요시설	•애플연구센터(전시관, 연구·체험관, 전망대 등) •애플농장관리센터(농기계, 기자재 보관), 애플농장체험장(사과 재배 시험포지) •휴게광장 및 야외전시장, 진입도로, 주차장 등
운영주체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운영특징	•사과나무단지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사과나무 분양을 통한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과꽃 따기 및 사과 수확 체험행사로 한정적임 •현재는 사과나무 분양이 공원운영의 중심이 되고 애플연구센터의 경우 사과홍보 및 편의시설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층에 체험공간만 구성되어 있을 뿐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사과테마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적 활용방안 마련을 노력 중임

#### 나) 운영 활성화 방안

##### ■ 사과나무를 활용한 농촌문화·자연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과유치원' 운영

- 사과재배 적지인 무풍사과나무단지에서 농촌·자연체험 및 사과활용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하는 정기적인 체험교육 과정으로 사과유치원 프로그램 운영
- 무주군 관내 어린이·청소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사과나무를 관리, 수확, 가공 및 요리 등을 체험하는 야외활동수업 프로그램 운영
- 무주 애플스토리 '사과나무의 한 해' 라는 과정에 따른 연중 교육일정을 계획하여 주기적으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자연을 소재로 한 특화 체험교육 사례, '숲유치원'

(1) 시설 개요

- 숲유치원은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숲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숲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만물과 교감하는 체험중심의 활동을 하면서 일정시간 생활하고 놀이하는 대안교육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숲에서 가능한 놀이중심의 유아주도활동으로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 주제 변경  
- (춘천국유림관리소 숲유치원 사례) 숲속의 작은집(숲속 친구들 집 관찰), 오감으로 만나는 숲(자연물 오감 느끼기, 자연물 악기놀이), 숲속 동화나라 (나뭇잎 패션쇼, 열매 이야기), 겨울숲(겨울눈과 겨울나무 관찰) 등 숲체험

(3) 운영 방법

- 전통적인 숲유치원  
- 통상 하루 4~6시간으로 일주일에 5일간 숲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 통합적인 숲유치원(일반유아교육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  
- 정기적인 숲의 날(숲Day)을 정하여 일주일에 한번이나 그 이상의 시간을 숲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숲체험 활동



자연물 오감 느끼기 활동

▶ 어린이에게 자연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경험하게 하는 놀이·흥미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학습놀이터로 주목

보은군의 마을연계 복합방문자센터 활용 사례, '사과나무체험학교'

(1) 시설 개요

- 사과나무체험학교는 보은황토사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체험활동을 전개하는 방문자센터의 역할을 함
- 사과나무체험학교 건물은 체험놀이터, 전시홍보관, 휴게실, 전망대 도서관 등으로 구성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사과나무 체험농장 육성·지원(인큐베이터 사업) 및 사과나무 분양  
- 1그룹당 30kg 수확 보증(10만원)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 분양회원 연중 체험활동 추진: 주말농장처럼 이용, 문자사과 제작, 축제 초대권 등  
- 사과나무 상품권 판매(원앙나무, 사랑나무, 가훈나무, 합격사과 등)  
- 꽃나들이(봄), 사과나무캠프(여름), 사과 1일 수확 체험(가을) 등
- 보은황토사과 직거래장터 운영
- 방문자 안내 및 종합 서비스

(3) 운영 방법

- 보은황토사과발전협의회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 인근 마을의 사과재배농가의 참여를 받아 사과나무 분양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각 농장에 분배하여 진행



사과나무체험학교 건물 전경



사과꽃나들이 체험행사

사과나무 상품권으로 '황토과 희망을 전하세요'



사과나무 상품권 판매

▶ 마을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사과나무 분양 및 현장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과재배농장의 거점역할을 함



■ 6차산업화를 적용한 새로운 수익모델인 체험형 '애플레스토랑' 조성

- 애플연구센터 2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과를 식재료로 활용한 계절별 특색 있는 요리 또는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거나 사과 먹거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이색체험 레스토랑(애플레스토랑) 운영
- 수확 시기에는 방문객이 애플농장체험장에서 직접 수확한 사과를 요리재료로 활용하여 음식 만들기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주변 지역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지역 외식업체 등과 협력하여 제철 식재료 조달 및 다양한 메뉴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체험·제조·판매 진행
- 또한 사과를 소재로 한 전시·캐릭터·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와 공간을 연계 활용

일본 오오무라 시의 다각적인 농·특산물 활용 사례, '팜 슈슈'

(1) 시설 개요

- 오오무라 드림팜 슈슈는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교류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농산물 직매소, 레스토랑, 체험교실 등으로 구성함
- 지역 농산물의 생산·제조·가공·판매 등 6차 산업의 확립을 지향함과 동시에 도시민과 주민의 교류를 도모함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대형 농산물 직매장
  - 개별관리시스템 및 농산물 실명제도를 통해 상품의 신뢰도 제고
  -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재고관리를 함으로써 저온창고 없이 농산물을 판매
- 친환경 레스토랑 및 젤라토/아이스크림 매장
  - 지역 생산농가의 채소 위주의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뷔페
  - 딸기, 쌀, 무화과, 배, 포도, 블루베리 등 지역의 사철 과일을 사용하여 젤라토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
- 가족단위 중심의 체험교실
  - 아이스크림, 케이크, 타르트, 핫도그, 빵, 잼, 찹쌀떡 등 과일을 사용한 다양한 제조·체험프로그램
  - 계절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확 체험활동

(3) 운영 방법

- 8개의 농가를 중심으로 한 영농법인에서 운영



농산물 직매장 내부전경



젤라토/아이스크림 매장



딸기 찹쌀떡 만들기 체험활동

▶ 지역의 자가 생산품을 1·2·3차 산업으로 점진적인 활용을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도모하여 시설 및 지역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전시 및 체험시설 중심의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 이천 어농지구 사례

### 가) 사업지구 시설 및 운영 현황

#### ■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쌀 콘텐츠 활용·연출의 보완 필요

- 이천 어농지구는 이천쌀의 우수성, 농특산물 판매, 지역 농촌관광 거점화를 목표로 하여 쌀문화전시관을 중심으로 체험용 경작지와 다랭이논, 쌀먹거리촌, 숲체험촌 등을 조성하였으며 다양한 행사 유치, MOU를 통한 권역협력망 구축 등 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쌀문화전시관(도정시설 등), 종합안내센터(쌀알 형상화)에 시설측면의 쌀 테마를 적용한 반면 쌀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활용 및 체험거리를 다양화해 집객시설로서의 공간구성, 연계·협력망을 적극 활용한 쌀 콘텐츠 활용방안 필요

#### [이천 어농지구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공원명칭	•이천농업테마공원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모기면 공월로 48
규 모	•182,000㎡
조성테마	•쌀
주요시설	•체험시설 : 다랭이논, 체험용 경작지, 경관작물 경작지, 약용식물원, 쌀문화관, 치즈학교, 풍년 축제마당, 쌀먹거리촌, 숲체험촌 •수경시설 : 바닥분수, 벽천폭포, 물놀이장, 자연정화연못, 전통연못, 물레방아연못 •종합안내센터, 이천쌀식품명품관, 주차장 등
운영주체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특징	•공원 전역에서 상시 및 계절별(월별)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고 있으나 조성테마인 쌀보다는 농업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됨 •집객시설의 형태의 공간구성 및 시설도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 하였으나 이를 실행함에 있어 시설 미임대 등 시행착오가 발생함 •지역문화 또는 관광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공간 활성화 협력망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진행사항을 논의 중임

### 나) 운영 활성화 방안

#### ■ 쌀을 테마로 한 로컬푸드 페스티벌인 이천 '라이스푸드 페스티벌' 개최장소로 활용

- 이천 쌀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요리경연 및 전시, 레시피 공유 등을 진행함으로써 쌀음식문화를 전파하는 쌀 콘텐츠 활용 행사로서 라이스푸드페스티벌 운영
- 행사장소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의 풍년축제마당으로 하며 매년 해당 행사시기에 어울리는 쌀음식 주제를 선정
- 이천 쌀과 농산물을 재료로 요리하고 판매 또는 경연을 전제로 참가등록을 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농산물을 테마로 한 도심 직거래 장터 사례, '마르쉐@'

(1) 운영 개요

- 농부들이 재배한 농산물, 그 재료로 만든 요리,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일종의 도시형 장터
- 마르쉐란 프랑스어로 시장이라는 뜻으로 마르쉐@개최장소를 명기하여 사용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농부팀, 요리팀, 수공예 및 이벤트팀으로 구분하며, 농산물, 가공품, 요리, 공예품 등 사진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은 판매
- 대화하는 시장을 모토로 함
-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한 판매 권장
- 공연, 농부워크숍 등 참가자의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 진행으로 볼거리 제공

(3) 운영 방법

- 행사일정 공지 후 출점신청을 받아 기존 참여팀과 신규 참여팀의 비중을 감안하여 해당행사 출점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현재까지 마르쉐@서울광장, 마르쉐@혜화, 마르쉐@시민의숲 등 개최



농부팀 판매모습(마르쉐@시민의숲)



수공예팀 판매모습(마르쉐@혜화)

▶ 도시공간에 농부들의 직거래 형태인 생활형 스토리 장터를 개최함으로써 도시민과 농업인의 교류여건 형성

■ 쌀 콘텐츠 강화 및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기업 안테나숍(홍보·판매관)' 유치

- 이천농업테마공원의 조성테마는 쌀이기 때문에 쌀과자, 쌀음료, 전통주, 떡볶이 등 쌀 관련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한 안테나숍 유치 가능
-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체험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은 안테나숍을 개설함으로써 상생전략을 바탕으로 홍보마케팅 진행

체험요소를 결합한 기업홍보 안테나숍 사례, '기린 이치방 가든'

(1) 시설 개요

- 하이트진로가 기린(KIRIN)의 아이스크림 맥주 '기린 이치방 프로즌 나마' 를 경험할 수 있는 단기간의 홍보·판매관 개설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DIY 프로즌 나마' 프로그램 진행
- 맥주를 마시는 것을 비롯해 맥주를 꾸미는 놀이와 접목하여 재미요소 가미
- 영하 5도로 얼린 거품을 슬러시처럼 생맥주에 올린 기린 프로즌 나마의 특성을 활용하여 거품 위에 캐릭터 가니쉬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장식 가능
- 매장안내 서비스 제공 : 미니버스, 인력거 등 매장 주변 배치

(3) 운영 방법

- 평일 오전 8시 ~ 오후 11시, 주말 오전 10시 ~ 새벽 1시 운영



기린 이치방 가든 강남역점



DIY 프로즌 나마 시연 모습

▶ 단순 판매를 위한 특정 행사공간이 아니라 체험 및 참여요소가 가미된 고객과 소통의 공간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확산

### 3) 하천저수지 중심의 수변형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 음성 원남지구 사례

#### 가) 사업지구 시설 및 운영 현황

##### ■ 공적시설로서 관리 운영상 한계 극복 방안 필요

- 음성 원남지구 농촌테마공원은 원남저수지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오토캠핑장 및 연꽃 생태공원, 산책로 등 휴식 및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수변 테마공원으로 2012년 부터 서천군청에서 관리운영 중
- 개장 후 무료이용 시설로 운영하다 운영예산 및 관리상의 문제로 2014년 6월부터 무료 전기공급을 중단,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검토 중
- 현재 테마공원 인근 농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촌권역이 위치하여 향후 권역 사업 및 프로그램과 연계, 마을공동체 위탁 운영방안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다각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음성 원남지구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공원명칭	•음성 원남 테마공원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934번지 일원
규 모	•52,349m <sup>2</sup>
조성테마	•수변(수변캠핑)
주요시설	•캠핑장 : 캠핑구역(19구획), 주차장, 체육시설, 공동개수대, 화장실 등 •수변 산책로 : 연꽃체험학습장, 연꽃습지, 연꽃미로공원, 산책길 등 •고추미광장, 교량, 취수보, 담수보 등
운영주체	•음성군
운영특징	•개장 이후 무료이용 시설로서 수변 캠핑장 및 산책로를 운영하였으나 급격히 증가한 이용객의 무절제한 이용행태로 관리비 과다 문제가 발생하는 등 관리운영의 차질이 생김 •사업지구의 주된 시설인 캠핑장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인근 마을에 캠핑장 관리운영 위탁 검토, 주변 유흥지에 품바예술촌 조성 예정 등 주변지역과 연계·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중

#### 나) 운영 활성화 방안

##### ■ 인근의 조촌권역과 운영 연계, '팜핑 테마공원' 으로 운영 방식 재정비

- 팜핑(Farm-ping)은 팜(Farm)과 캠핑(Camping)을 조합하여 농촌체험형 캠핑을 뜻하는 합성어로 최근 음성 보라체험농원의 농장야영, 흥성 용봉산 캠핑장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개념의 농촌체험
- 원남테마공원은 총 19구획의 야영장 및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농촌체험이 가능한 인근의 농촌마을이 입지하고 있어 팜핑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에 적합한 조건
- 향후 원남테마공원 시설 관리를 조촌권역의 마을공동체에 위탁 관리 운영함으로써 마을 농산물 수확 및 가공요리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테마공원의 캠핑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운영 안정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농촌캠핑, '팜핑' 운영 사례, '음성 보라 체험농원'

(1) 시설 개요

- 충북 음성면 감곡리에 위치한 블루베리 체험농장을 중심으로 농촌체험과 캠핑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업회사법인 (주)젊은농부들이 운영 중인 테마캠핑장  
-전체 약 10,000㎡ 규모(체험장, 팜핑장, 카페, 교육장 등)



블루베리 수확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보리숲 팜핑 패키지 프로그램  
-캠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기농 쌈채소 수확, 블루베리를 활용한 음식만들기 체험, 블루베리 담금주 숙성 바비큐, 캠프파이어 등 당일 및 1박2일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한국농식품전문학교의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운영  
-2014년 10월 한국농식품전문학교의 현장실습교육장으로 지정 및 (주)젊은농부들의 이석무대표를 현장교수로 위촉,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예정



캠핑장 전경

▶ 젊은 인력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농촌체험형 캠핑시설로서 농촌체험과 도시민이 선호하는 레저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시도

■ 농장에서 열리는 로컬푸드 축제, 음성군 '팜파티(Farm party)' 공간으로 장소마케팅

- 팜핑의 선도적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는 음성 보라 체험농원과 함께 원남테마공원, 기타 군 내 팜핑체험이 가능한 농촌마을을 연계하여 음성군 농촌관광의 대표 이미지로서 농장에서의 로컬푸드 체험, 팜파티의 장으로 자리매김
- 음성군 내 캠핑장과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는 로컬푸드 축제, 팜파티의 장소로 활용

친환경 로컬푸드 팜파티 운영 사례, '가평 팜파티 슬로우(SLOW)'

(1) 운영 개요

- 가평군 강소농 팜파티 자율모임 농부들의 'FARM TO TABLE(팜 투 테이블, 농장에서 바로 딴 농산물로 요리를 하고 즐기는)' 먹거리를 재즈 등 문화 프로그램과 등과 함께 구성한 친환경 축제

(2)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내 프로그램으로 연계 운영  
-농촌 6차 산업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팜파티를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과 연계 진행과 더불어 지역예술가가 재능기부로 참여  
-자라섬 캠핑장 이용객 및 재즈공연장 관람객을 상대로 가평 농산물로 만든 브런치를 판매, 결제는 현금과 가평사랑 상품권으로만 가능



가평 팜파티

▶ 지역의 대표 축제인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과 연계, 가평군의 농촌과 농산물, 예술을 융합함으로써 가평 농업농촌을 효과적으로 홍보



## 04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성과지표 개발



1. 농촌테마공원 성과지표 개념 및 유사사례
2. 농촌테마공원 성과지표(안)
3. 농촌테마공원 성과지표 활용 및 관리방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1. 농촌테마공원 성과지표 개념 및 유사사례

## 가. 성과지표 이해

### 1) 성과지표 개념 및 유형

#### ■ 성과지표의 개념

- 지표(Indicator)란 ‘지적·측정·결정하기 위한’ 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indicare’ 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실체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지칭하는 표식이나 측정값’ 이라고 하는데, 세계지속가능발전연구원은 지표를 ‘복잡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현상과 상태를 정량화·단순화한 것’ 으로 정의(최지연, 2007<sup>1)</sup>)
- 성과지표는 성과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내용과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성과측정 지표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임
- 성과지표의 개념으로 ‘사업이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한국개발연구원, 2007<sup>2)</sup>’,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계량적·질적으로 측정하는 잣대(행정안전부, 2009<sup>3)</sup>’ 를 말함

#### ■ 성과지표의 유형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과 측정산식(측정방법)으로 표현해야 함
- 성과지표는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로 이어지는 성과관리 기본골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량적인 방법으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의미함
- 성과지표는 정량적 측정여부, 기준산업, 사업추진 단계별로 투입·과정·산출·결과 지표로 분류됨(국무조정실, 2006<sup>4)</sup>)
- 정량지표란 구체화된 양적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지표이고 정성지표란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를 의미함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른 지표의 유형]

구분	정량지표	정성지표
정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지표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
특성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음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음

1) 최지연(2007). 외국 연안 관리지표 비교분석과 적용시사점, 월간해양수산, 75. pp.5-27  
 2) 한국개발연구원(2007).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3) 행정안전부(2009). 직무성과 계약 시 목표·지표 설정  
 4) 국무조정실(2006). 정책조정 매뉴얼 및 정책조정 프로세스 성과지표 연구

## 나. 성과지표 관련 사례

### 1) 농림축산식품부 성과지표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지표는 총 31개로 산출지표 6개(19.4%), 결과지표 25개(80.6%)로 구분되며 이 중 정량지표수는 27개로 성과지표 중 87.1%를 차지
  - 성과목표는 18개로 성과목표 당 산출지표는 약 1.7개가 해당
- 농림축산식품부 성과목표 성과지표는 정량지표가 대부분으로 정성지표의 비중이 12.9%에 불과하며, 정성지표는 이해관계자(이용객, 사업자 등)의 만족도임
- 포괄보조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경우 리서치 기관을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체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성과지표별 측정산식]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자료처)	회계구분
				지원형태
일반농산어촌 개발	일반농산어촌지역 주민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	리서치 전문기관 활용한 지역주민 조사	광역특별
				지자체 보조 (국비 70%)
도농교류 활성화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 증가율(%)	(당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 수/전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 수)×100	행정조사(지자체, 녹색농촌체험마을)	농특
				지자체 보조 (50%)
어촌어항 관광기반 조성	어촌체험마을 체험 소득 증가율(%)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대장을 근거로 '12년말 어촌체험마을의 체험 소득 증가율을 분석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대장(통계자료)	농특
				지자체 보조 (50%)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업체 매출액 증가율(%)	(전년 11월말 매출액/전전년 11월말 매출액 *100)-100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한 조사	농특
				지자체 보조 (국비 50%)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관광자원개발사업 성과지표 개발.

■ 도농교류사업분야 평가

- 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도농교류 정책사업 평가는 아래와 같이 크게 전반적 사업평가와 사업별 성과 평가로 구분됨
- 전반적 사업평가는 정책형성 목적, 추진체계 형성과정, 사업실행 과정을 평가
- 사업별 성과평가는 법제도, 인프라·마케팅, 콘텐츠·프로그램, 경제성, 휴먼웨어, 지속성을 평가
- 일반적인 정책사업 평가와는 다른 체계로 접근을 시도하였고,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다양한 분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도농교류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항목
전반적 사업 평가	정책형성 목적	◦ 농외소득 기회 마련, 지역경제기반 다각화 도입, 사회/문화 활성화 초석, 도시민 유입 유도, 농산물 판로 확보
	추진체계 형성 과정	◦ 계획 수립 시 농촌주민 의견 반영, 공정한 사업 선정 심사, 불공정한 사업 선정에 대한 불신 유발, 추진주체의 독창성과 자율성 부족, 추진주체의 독자적 통제 경향, 행정기관의 사업 진행주도 경향
	사업실행 과정	◦ 형식적인 사업 수행 조직, 공무원/외부 전문가의 일방적 주도, 지역 주민 역량 형성 후 사업 지원, 지역주민의 태도나 역량 문제, 사업수행 조직의 주도권행사로 수동적 주민 참여
사업별 성과 평가	법제도	◦ 농촌관광 관련 부서의 지원제도 개선, 금융 및 재정적 지원용이, 지자체의 지속적 지원 유도, 농업 정책 기조 전환의 계기
	인프라·마케팅	◦ 농촌의 전반적 생활환경 개선, 농촌의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 숙박, 화장실 등 수용시설 개선, 체험마을 홍보에 도움
	콘텐츠·프로그램	◦ 도농교류 우수사례 창출 계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도농교류 메뉴일 제작의 계기, 지역 및 마을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경제성	◦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 도시민의 농촌 방문 횟수 증가에 기여
	휴먼웨어	◦ 농촌주민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기여, 사업 전담인력 육성에 기여,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 여성 및 노인 인력 활용 기회 제공, 출신지역 전문가 활용 계기, 농촌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
	지속성	◦ 각 사업의 지속 여부 평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과 평가지표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향토산업 활력과 지역산업 활력의 2개 분야를 평가함
- 향토산업 활력에 대한 평가지표는 5개로 향토산업체 종사자 수, 향토산업체 수, 향토산업체 종사자 수 비중, 향토산업체 수 비중, 지원대상 향토산업체 매출액(방문객)임
- 지역산업 활력에 대한 평가지표는 4개로 제조업체 종사자 수, 서비스업 종사자 수, 제조업체 수, 경제활동인구임
- 모든 지표들이 계량적 접근이 가능하고 양적 자료수집과 통계분석이 가능하여 특정한 시점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음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과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적 성과 평가기준
향토산업 활력	향토산업체 종사자 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 간의 관련 향토산업체의 종사자 수 변화
	향토산업체 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 간의 관련 향토산업체 수 변화
	향토산업체 종사자 수 비중	기준시점과 평가시점 간의 제조업(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관련 향토산업체의 종사자 수 비중 변화
	향토산업체 수 비중	기준시점과 평가시점 간의 제조업체 수(서비스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관련 향토산업체 수 비중 변화
	지원대상 향토산업체 매출액(방문객)	기준시점과 평가시점 간의 관련 향토산업체 매출액(방문객) 변화
지역산업 활력	제조업체 종사자 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 간의 제조업체 종사자 수 변화
	서비스업 종사자 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 간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 변화
	제조업체 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 간의 제조업체 수 변화
	경제활동인구	기준시점과 평가시점 간의 경제활동인구 변화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 개발

## 2) 문화체육관광부 성과지표

### ■ 국내관광 활성화사업 성과지표

- 국내관광 활성화 목표는 국내관광수요 촉진 및 지역관광 수요촉진으로 볼 때 핵심 성과 지표로 국민관광총량 변화, 국민관광 참여율(%), 국민관광 연간 여행횟수(회), 국내관광 소비 지출액 변화(%) 등임
- 정성지표로는 수요자 측면에서 국민 여행의 만족도를 핵심성과지표로 볼 수 있음
- 국내관광 활성화 관련 성과지표는 각 부문별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을 활용하고 정성지표는 주로 관광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국내관광 활성화 관련 성과지표(안)]

부문		성과지표(안)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국내관광 및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관광 수요촉진	-국민(국내)관광 총량 변화(인, 회) -국민(국내)관광 참여율(%) -국민(국내)관광 연간 여행횟수(회) -국내 관광 소비지출액 변화(%)	-국민여행의 만족도(5점척도)
	지역관광 수요촉진	-지역인구대비 관광객수 비율(%) -지역숙박시설 관광객 투숙률(%)	-지역관광만족도(5점척도)
관광인프라 확충지원		-관광시설(숙박, 음식점업) 증가(실, 개소) -관광시설 이용률(%) -관광 편의시설 수(개)	-시설이용 만족도(5점척도)
관광안내 수용체계		-관광안내판 수(개) -관광안내소(개소) -관광안내원(명)	-이용만족도(5점척도) -서비스의 질(5점척도)
관광정보화지원		-국내 관광정보 조회 건수(조회면수) -관광안내 전화이용자 수	-이용만족도(5점척도) -서비스의 질(5점척도)
관광상품개발지원		-관광상품개발 예산투입액(원) -관광상품개발 예산증가율(%)	-관광상품의 매력성(5점척도)
국내(지역) 관광홍보 및 캠페인		-관광홍보예산 증가율(%) -국민(국내) 관광총량 변화(인, 회)	-국내 관광 인식변화(5점척도) -국내 관광이미지 변화(%)
관광 전문인력 확충		-관광 전문인력 수(명) -관광안내원 수(명)	-서비스제공의 만족도(5점척도)
국내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내관광 관련 고용자 수(명) -관광산업의 고용성장률(%)	
복지관광 활성화		-복지관광 수혜자 수(명) -취약계층(저소득층) 관광수혜자 수(명) -복지관광 지원 실적(예산액)	-복지관광 만족도(5점척도)

참고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 2. 농촌테마공원 성과지표(안)

### 가. 성과지표 개발

#### 1) 성과지표 개발 기본방향

##### ■ 성과지표 개발방향 검토

- 성과지표는 사후평가단계에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주로 이용됨
- 성과평가에서는 투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목표의 정량적 기대치와 실적치를 비교하여 효과성, 효율성, 시장성, 파급효과 등 평가
- 사업의 완료단계에서 실시되는 사후평가인 성과평가에서는 주로 사업의 전략적 적절성과 집행상의 효율성, 영향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 실제 외국사례에서도 목표달성도, 효율성,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 수행됨

[사업 사후단계에서의 평가지표]

사업 단계	미국의 PART	재정사업자율평가	군특사업평가
사후 단계	-성과목표 대비 진척도 -효율성 및 비용 효과성의 개선도 -타 사업 대비 성과 -종합적 사업평가의 효과성	-사업평가의 객관성과 종합성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사업고객 및 이해관계인의 만족도 -평가결과의 제도 개선 및 예산편성에 활용	-목표대비 성과 -국가균형 및 지역발전 기여도

#### 2) 농촌테마공원 성과지표 개발방안

##### ■ 농촌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

-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는 평가방법은 농촌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타 분야로 확산시키고 부정적인 면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임
- 단점은 다양한 농촌지역분야 사업과 평가를 위한 기준과 잣대가 맞지 않아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아래 표는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을 평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성과지표 항목(안)이 검토되었으나 구체적 성과지표인 계량화된 측정이 쉽지 않고, 항목이 복잡하여 본 연구 적용은 어려움

[사업사후단계에서의 평가지표]

구분	평가 분류	항목(안)
전체 사업 평가	정책형성 목적	◦ 농외소득 기회 마련, 지역 경제기반 다각화 도입, 사회·문화 활성화 초석, 도시민 유입 유도, 농산물 판로 확보
	추진체계 형성 과정	◦ 계획 수립 시 농촌주민 의견 반영, 공정한 사업 선정 심사, 불공정한 사업 선정에 대한 불신 유발, 추진주체의 독창성과 자율성 부족, 추진 주체의 독자적 통제 경향, 행정기관의 사업 진행주도 경향
	사업실행 과정	◦ 형식적인 사업 수행 조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의 일방적 주도, 지역 주민 역량 형성 후 사업 지원, 지역주민의 태도나 역량 문제, 사업수행 조직의 주도권행사로 수동적 주민 참여

■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검토

-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평가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도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정량적, 정성적 측면에서 측정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어촌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이 사업은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원대상업체 매출액 증가율(%)’ 로 평가지표를 설정함
- 지자체의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어 있으나 뚜렷한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상기의 유사사례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기초적으로 도출해 볼 수 있음
- 정량적 평가지표로는 방문객 관점에서 방문객 수(인), 방문객 증가율(%)이 대표적이고,  
정성적 평가지표로는 방문객 만족도(%), 농촌테마공원 인지도(%), 지역주민 만족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양한 지표(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적절한 항목을 설정함

## 나. 성과지표(안)

###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 농촌테마공원의 성과목표는 ‘도시민과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휴식·휴양공간 제공’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①방문객 증가율(%), ②이용만족도(5점 척도), ③농촌테마공원 인지도(5점 척도)로 구성함

#### ■ 성과목표 적정성 검토

- 아래의 7개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과지표 선정(기획재정부 참고)
- 성과지표는 궁극적으로 사업목적에 반영하는 결과지표가 선정되었는가?
- 성과지표는 정량지표로 선정되었는가?
- 정량지표는 지엽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은가?
- 정성지표 선정 시 산출의 정량지표도 같이 선정되어 있는가?
-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측정기간 범위, 단위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성과지표의 자료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과 정보인가?

### 2) 성과지표 측정

#### ■ 농촌테마공원 성과지표 측정산식

- 농촌테마공원은 방문객 증가율과 이용객 만족도, 인지도 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
- 방문객 증가율은 전년도 방문객 수와 비교하여 증감을 수치로 파악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이용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정한 시점 대비 만족도의 증감을 측정, 인지도는 국민들이 농촌테마공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전화조사 등)로 측정함

####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문객 증가율(%)	$(\text{금년방문객} - \text{전년방문객}) / \text{전년방문객} * 100$	지자체 행정조사
이용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척도)	농촌테마공원 이용객 설문조사
인지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대도시 거주 성인남녀 약 1,000명 대상으로 조사	무작위 추출 조사



### 3. 농촌테마공원 성과지표 활용 및 관리방안

#### 가. 성과지표 활용방안

##### ■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초 자료

- 성과지표의 개발은 집단별, 계층별, 부문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집행의 사전사후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현상을 시의성 있게 분석, 판단함으로써 도농교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활용

##### ■ 수요자 만족도 평가의 기초 자료

- 성과지표는 수요자 만족도와 관련되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별, 계층별 등에 따라 만족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성과지표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사회계층별, 지역별 관광편차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지표의 종합화

- 성과지표가 개별, 집단, 계층에 대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종합적인 형태인 성과지수개발을 통하여 정책의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나. 성과지표 관리방안

##### ■ 측정주체의 전문화

- 성과지표의 개발과 측정 및 평가는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대행하여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농촌지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에 적극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 성과지표의 지속적 개선

- 농촌테마공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회문화, 경제, 정치의 변화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가능하고 변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정책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주요한 척도임
- 따라서 유효성이 저하된 성과지표를 대체하여 변화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5 부 록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 기타 관련 정책사업 가이드라인 사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



## 목 차

I.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69
II. 사업준비단계 .....	77
III. 사업시행단계 .....	91
IV. 사업운영단계 .....	101
V. 참고사항 및 관련서식 .....	113





# I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1 사업개요

## 1. 농촌테마공원의 개념

- 농촌테마공원이란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농촌자원을 테마로 하여 휴식·휴양 및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 여가 및 체험·휴양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농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원시설
- ※ ‘농촌자원’이라 함은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 즉 농촌의 자연 또는 농업시설(경작지, 저수지 등), 독특한 농촌주거 또는 문화, 생활방식으로 형성된 경관자원, 지역 고유의 농업생산 및 가공, 서비스 등 1·2·3차 산업자원, 농촌의 다양한 인문·역사, 스토리 등을 포함한 문화자원, 농촌의 경제 및 생활공동체 중심의 사회문화활동 등 농촌 사회자원을 말함

## 2. 사업의 목적

- 농촌 지역의 농업·농촌자원 가치와 중요성을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전·홍보·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및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 생산 및 가공, 서비스 등 1·2·3차 산업의 융복합 및 다각화를 실현
- 농촌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여 지역 내 소득 및 고용의 기회를 증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3. 추진방향

- 농업·농촌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사회 자원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공원 조성
- 자연경관, 전통문화 및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반 및 체험·휴양시설 등 시설 조성 위주로 지원
-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농·특산물의 생산·가공·판매·서비스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

## 4.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농어촌정비법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동법 시행령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 2

##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는 기본(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사업자,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지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 중 어촌을 제외한 농촌지역
- 지원 대상지구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승인받은 지구
  - ※ 시·군·구당 1개 지구만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 시설조성비

- 공원기반시설 : 도로(진입도로, 대상지 내 도로), 공동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광장 등), 공원 관리지원시설(관리사무소, 대피시설 등), 공원 경관시설 등
- 유통·공급 및 환경기초시설 :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 편의시설 : 파고라, 벤치, 안내판, 음수대, 전망대, 다목적 체육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음식점, 카페 등), 숙박시설(펜션, 방갈로, 야영장 등)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 지원시설비(국비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은 25%\*\*

\* 지원시설비 : 기반시설비 + 체험·휴양시설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 국비 보조율(25%)은 '15년 실시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지구부터 적용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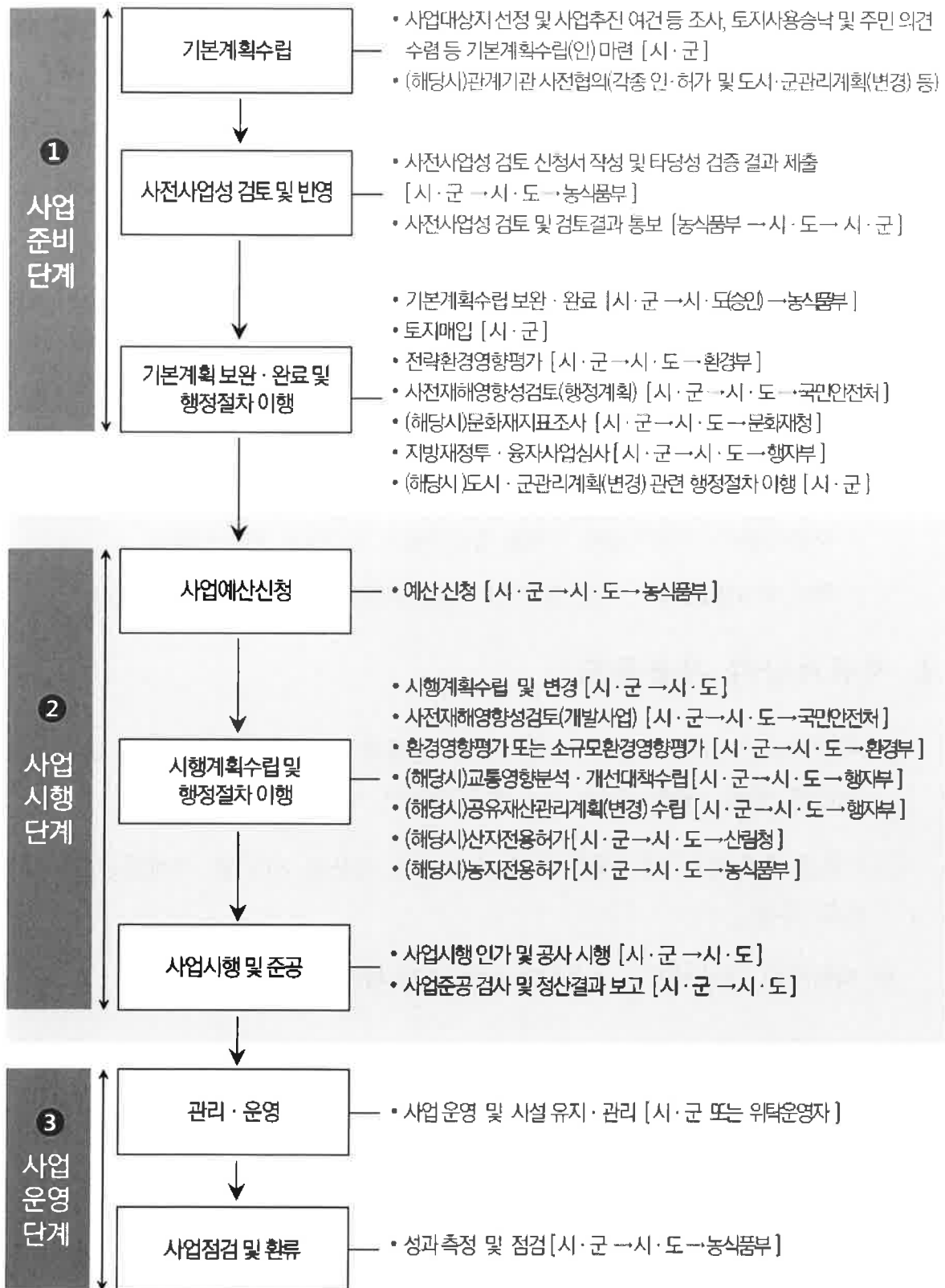
- 지원자금은 도입시설의 조성 및 시행계획 수립과 제반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해 사용 <붙임 1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자체자금(지방비)으로 추진

※ 지원제외 대상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적용

## 5. 지원형태 및 기준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자금배정 이후 시행계획수립 시부터 3~5년간 지구당 50억원 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단,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25%까지 지원)
  - 단, 지방비 및 민간자본은 추가부담 가능

## 6. 사업추진절차



## 7. 사업추진 총괄 체크리스트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총괄 체크리스트 >

구 분		체크리스트 목록
① 사업 준비 단계	기본계획수립	개발여건분석 ○ 지역현황 ○ 사업대상지 특성 분석
		개발기본구상 ○ 개발비전 및 목표설정 ○ 조성테마 선정 ○ 공간구상 ○ 토지이용계획
		시설(공간) 조성계획 ○ 동선계획 ○ 조경·경관계획 ○ 도입시설계획 ○ 종합계획도
		관리운영계획 ○ 관리운영방식 선정 ○ 관리운영 추진주체 구성 ○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프로그램 운영계획
		투자계획 ○ 공종별·연차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계획 ○ 민자유치계획(필요시) ○ 사업타당성 분석 ○ 파급효과 분석
		기타 첨부사항 ○ 토지매각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 주민설명회 등 의사결정 자료 ○ 기타 기본계획수립 시 근거 서류 및 자료 ○ 각종 인·허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에 대한 관계기관 사전협의(해당시) 결과
	사전사업성 검토	입지여건 ○ 부지확보 여부 및 가능성 ○ 법적 제한사항 여부 ○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 장소적 입지의 타당성
		사업의지 ○ 사업추진주체(시장·군수) 의지 ○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 ○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
		투자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규모 적정성 ○ 지방비 부담 능력 ○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합리성
		사업효과 ○ 투입대비 산출효과분석 ○ 투자대비 편익분석
민원발생 ○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기본계획 보완·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li> <li>○ 지원제외대상 사업인지 여부</li> <li>○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여부</li> </ul>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여부</li> </ul>
		기본계획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사항</li> </ul>
		부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매입 방법</li> <li>○ 토지매입 완료 여부</li> </ul>
② 사업 시행 단계	예산신청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요구서 작성/제출</li> <li>○ 사업비 집행 비율 점검 등</li> </ul>
		주민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회, 공청회 등 이행여부</li> <li>○ 전문가 자문여부</li> </ul>
	시행계획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보고서</li> <li>○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li> <li>○ 설계도서</li> <li>○ 설계예산서</li> <li>○ 각종 인·허가 자료 및 협의자료</li> </ul>
		관리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관리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주체 선정여부</li> <li>- 운영활성화 방안 수립 여부</li> </ul> </li> </ul>
		행정절차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이행여부</li> <li>○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li> <li>○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해당시) 이행여부</li> <li>○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립(해당시) 이행여부</li> <li>○ 산지전용허가(해당시) 이행여부</li> <li>○ 농지전용허가(해당시) 이행여부</li> </ul>
		공사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률 점검 등</li> </ul>
	사업시행 및 준공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인허가 승인여부</li> </ul>
		준공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준공현황 점검(준공검사)</li> <li>○ 운영준비사항 점검</li> </ul>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운영체제 확정여부</li> <li>○ 시설 유지관리 및 활용사항</li> </ul>
	③ 사업 운영 단계	사업점검 및 환류	추진상황점검
운영상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실적 및 운영효과</li> <li>○ 향후 시설 유지 및 운영활성화 방안</li> </ul>



## II. 사업준비단계



# 1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은 사업의 기본방침이 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 여건 파악, 부지조건, 연계 및 영향 요소 등의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정리하여 실시설계 추진 전 기본적인 방향을 확정하는 계획

## 시장·군수

-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표 1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군 자체수립)
- 기본계획수립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

< 표 1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 >

### 1 개발여건분석

#### 1.1 지역현황

- 입지현황
- 인문·사회현황
- 농업·농촌현황
- 관광현황
- 자연현황

#### 1.2 사업대상지 특성 분석

- 사업대상지 선정요건
- 사업대상지의 활용 여건
- SWOT분석

### 2 개발기본구상

- 2.1 개발비전 및 목표설정
- 2.2 조성테마 선정
- 2.3 공간구상

### 3 시설(공간) 조성계획

- 3.1 토지이용계획
- 3.2 동선계획
- 3.3 조경·경관계획
- 3.4 도입시설계획
- 3.5 종합계획도

### 4 관리운영계획

- 4.1 관리운영방식 선정
- 4.2 관리운영 추진주체 구성
- 4.3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4.4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4.5 프로그램 운영계획

**⑤ 투자계획**

- 5.1 공중별·연차별 투자계획
- 5.2 재원조달계획
- 5.3 민자유치계획(필요시)
- 5.4 사업타당성 분석
- 5.5 파급효과 분석

**⑥ 기타 첨부사항**

- 6.1 토지매각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 6.2 주민설명회 등 의사결정과정 관련 자료
- 6.3 기타 기본계획수립 시 근거가 되는 자료
- 6.4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자료

**기본계획수립 세부사항**

**① 개발여건분석**

**1.1 지역현황**

- 지역현황 작성 시 시·도, 시·군, 읍·면 단위로 기술
- 입지현황
  - 위치, 면적, 행정구역, 접근체계 등 분석
  - 입지는 광역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
- 인문·사회현황
  - 인문현황, 지역경제, 공간구조 등 분석
  - 인문현황은 인구 규모, 인구 구조, 인구 증감 등 기술
  - 지역경제는 산업구조, 재정자립도 등 기술
  - 공간구조는 정주체계(대상지와 마을과의 연계성), 토지이용, 교통망 등 기술
- 농업·농촌현황
  - 농가, 주요 재배작목, 지역특산물 및 농산업 관련 현황분석
  - 농촌체험마을, 농어촌휴양단지 등 농촌관광 관련 현황분석
- 관광현황
  - 관광자원, 관광개발, 지역축제, 관광객추이 등 분석
- 자연현황
  - 주요 산림, 하천, 저수지 등 환경보전 관련 용도지역의 분포현황 분석

## 1.2 사업대상지 특성 분석

### ○ 사업대상지 선정요건

- 개발 가용지의 위치, 면적 등 일반현황 작성
- 표고, 경사도, 향, 식생 등 지형적 여건 분석
- 접근성,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확보 용이성 등 인문적 여건 분석
- 교통, 접근성, 경관 등 물리적 여건 분석
- 최종적인 사업대상지의 구역 제시

### ○ 사업대상지의 활용 여건

- 사업대상지 내 또는 주변지역의 주요 자원 분포현황 작성
  - 토지이용, 토지소유현황 등을 작성
  - 상위계획 중 지역이나 사업과 관련된 개발계획 검토
  - 개발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관련 시설 등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 검토해야 할 개발관련 계획 및 법규 : 도시·군관리계획,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한 제약 요인 등 검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 ○ 개발여건분석 종합

- 개발여건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상지가 지닌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
- ※ 개발여건분석 부분에서 위치도, 현황분석도 등의 도면 작성 시 사용하는 도면 축척은 대상지역에 따라 1/50,000, 1/25,000 중 선별
- ※ 도면 1매에 계획구역 전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 축척을 사용

## ② 개발기본구상

### 2.1 개발비전 및 목표설정

- 개발여건분석을 토대로 해당 농촌테마공원이 단기적·중장기적 관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방향 설정
- 개발비전은 실현 가능한 농촌테마공원의 미래상을 제시
- 개발비전을 바탕으로 달성코자하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되, 사업지구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정성적 목표와 이를 계량화한 발전지표를 제시하는 정량적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

### 2.2 조성테마 선정

- 지역 내 농촌관광의 트렌드 및 방문객 요구, 타 지역과의 경쟁우위 등 분석
- 사업대상지의 향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을 선별하고 이를 활용한 테마를 선정
- 시설물 디자인, 공간 구현, 체험프로그램 등 테마구현 방식 기술

### 2.3 공간구상

- 조성테마를 비롯하여 시설의 유사성, 차별성, 연계성, 접근성 등을 분석한 후 사업지구 내 기능 및 역할에 따른 공간구획(zoning)을 설정
- 공간구상은 실제 부지 도면 위에 공간의 상호관계 및 구역을 표현

## ③ 시설(공간) 조성계획

### 3.1 토지이용계획

- 사업지구 내 환경·지형적 특성에 맞도록 공간을 분할하며 도입시설(공간) 기능 및 이용형태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용도를 배분하고 경계를 설정
- 토지이용계획의 결과는 토지이용계획표와 토지이용계획도로 제시

### 3.2 동선계획

- 기존 동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지형태, 자연지형,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 및 노선 선정
- 동선체계는 보·차도 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시설 접근로,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구분하여 계획
- 동선계획은 계획내용과 함께 동선 계획도를 작성하고 동선체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3.3 조경·경관계획

- 조경 식재계획, 포장계획, 경관계획 등 포함
- 주변의 자연환경 및 농촌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녹지와 경관 조성
- 식재 수종은 가급적 향토수종으로 하되 사업지구 내 기능과 경관성을 고려하여 선택
- 조경 식재계획은 식재수종, 식재기능, 조경시설물 등에 대한 내용 제시
- 포장계획은 사용재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간별로 제시
- 경관계획은 조성테마 및 도입시설(공간)에 따른 개성 있는 경관을 연출과 농촌테마공원의 전체적인 경관형성에 대한 내용 제시

### 3.4 도입시설계획

- 도입시설은 지역적·공간(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시설을 선정하며 민간자본 유치여부에 따라 도입 가능한 시설 검토
- 다양한 체험 및 휴양·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당 사업지구만의 선정기준 제시
- 사업대상지 내 구획별로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선정

### 3.5 종합계획도

- 사업지구의 시설(공간) 조성계획을 구현했을 때의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전체적으로 표현된 도면 제시
- ※ 시설(공간) 조성계획 부분에서 세부적인 계획도면 작성 시 사용하는 도면 축척은 1/25,000 사용
- ※ 도면 1매에 계획구역 전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 축척을 사용

## 4] 관리운영계획

### 4.1 관리운영방식 선정

- 공공직영, 위탁운영(전체, 부분)을 비교·검토하여 사업지구에 적절한 관리운영방식 채택

### 4.2 관리운영 추진주체 구성

- 관리운영방식을 토대로 단독주체, 공동주체로 유형을 구분하며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지구에 적합한 관리운영주체를 제시
- 관리·운영주체의 사업 수행 역량을 인력, 조직, 자금조달, 마케팅 등의 능력 판단

### 4.3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관리운영조직 및 구성 인력계획을 제시

### 4.4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도입시설물별로 운영방법 및 주체, 유지관리방법 및 주체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제시

### 4.5 프로그램 운영계획

- 사업지구 조성테마 및 도입시설, 주변여건 등을 활용한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계획을 제시
- 활용 가능한 홍보·마케팅방안 도출 등



## 5 투자계획

### 5.1 공종별·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비 산정은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체사업비를 먼저 제시한 후 공종별·연차별로 작성하여 제시
- 사업비의 투입시기와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업비를 산정

### 5.2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은 공공(국비, 지방비 등)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재원을 검토
- 공공부문의 재원확충 또는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민자유치에 대한 방안을 제시

### 5.3 민자유치계획(필요시)

-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 시 작성
- 민간사업자의 참여자격, 참여범위, 참여방법 등을 기술
- 사업추진방식, 사업기간, 사용료 결정, 기타조건 등 사업시행조건 기술

※ 기본계획수립 당시 민간사업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별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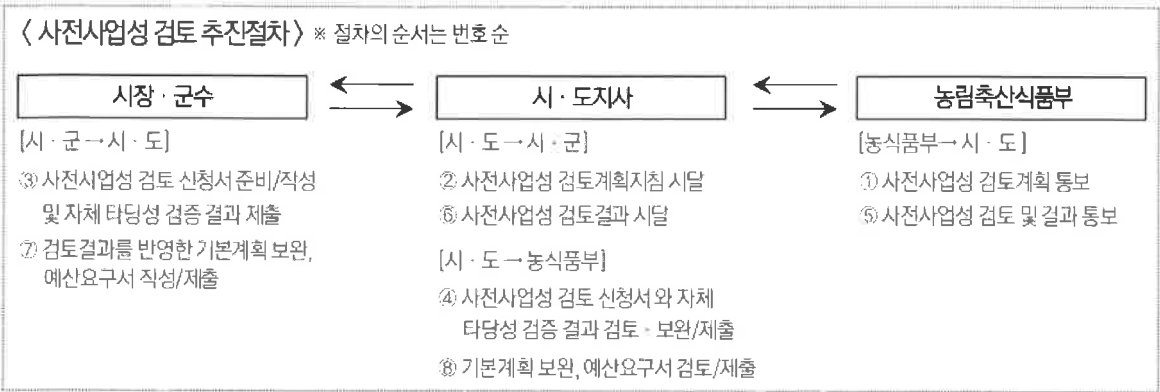
### 5.4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경제성, 사업성 등을 검토
- 경제성은 미래 손익추정으로 검토
- 사업성은 비용편익분석, 투자대비 산출효과분석 등으로 검토

### 5.5 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로 구분
-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고용, 소득, 부가가치 등의 파급효과 측면을 추정
-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각각 예측

## 2 사전사업성 검토 및 반영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반영한 사전사업성 검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신청서식>와 자체 타당성 검증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전사업성 검토 신청서와 자체 타당성 검증 결과를 검토·보완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까지)
  - 사전사업성 검토 신청서 작성자는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 타당성 검증 항목은 <붙임 2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자체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착안사항>에 준함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익년도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계획을 시·도에 통보(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4월)
  - 서면 검토와 발표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필요시 현장 확인)
  - 조건부 승인 시, 조건사항을 보완 또는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

### 3 기본계획 보완·완료

#### (1) 기본계획 승인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농촌테마공원 사전사업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종 검토·보완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고시
-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보상하여 부지를 확보
- 토지매입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름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하며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서 및 승인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2) 기본계획 승인 전·후 행정절차 이행사항

##### 시장·군수

- 관련 법령·기준이 해당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사항에 따라 다음 <표 2 - 기본계획수립 전·후 행정절차 이행사항(예시)>에 대하여 검토·추진 (<붙임 3 - 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사항 설명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되어 농촌테마공원 사업지구 기본 계획 승인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확정 전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를 관계부서 및 기관과 검토·협의 진행
- (문화재지표조사) 사업대상지구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미만 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조에 따라 계획수립 완료 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대상(시·군·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 되므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행정자치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후부터 실시 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이행
-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관련 절차) 사업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사업 방식을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해당 사업지구에 적합한 개발방식으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수립

< 표 2 - 기본계획 승인 전·후 행정절차 이행사항(예시) >

구 분		이행 대상	이행시기
필수 이행 사항	승인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2, 제22조 2 (별표 2)</li> </ul>	
		자연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 (별표 1)의 대상 행정계획</li> </ul>
	승인 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군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수립 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li> <li>○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융자사업을 심사,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 심사 가능</li> </ul>
해당 시 이행 사항	승인 전	문화재지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에 준함</li> </ul>
	승인 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관련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대상지 개발 방식에 적합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변경) 필요</li> </ul>



## Ⅲ. 사업시행단계





# 1 사업예산신청

## 시장·군수

- 대상지구 총사업비 중 국고는 지원한도(50억원)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 추진
- 부지확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본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 신청 불가
  - \*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개발사업(자연재해대책법 등), 문화재지표조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기관 협의(각종 전용허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 지원제외 대상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적용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의견을 반영한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5월 말)
  - 예산신청은 사업비 집행에 부담되지 않도록 연차별로 균형 있게 배정
  - 1차년도 예산신청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시행계획 시 행정절차 이행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정
- ※ 자금배정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적용

## 2

## 시행계획수립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실시 설계 업무와 개장 후 운영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위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함께 진행하는 실질적인 계획

### 시장·군수

-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표 3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야 함(<별지 제2호 서식 -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따라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음, 후자의 경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별표5]에 의함
- 시행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수립 가능
- 시행계획은 사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수립(예산지원 계획에 맞춰 년차별(3~5년) 계획으로 작성)하되, 공종별로 분리하여 수립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대상지선정,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준비 단계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별지 제3호 서식 - 시행계획수립 시 의견수렴 및 조치사항>)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 내용을 고시

- 시행계획수립 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지구명칭의 변경 및 지구범위의 조정(당초 대상지구 면적의 10% 범위 내 증감)
- 기타 단순 착오 및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사업시행 중 시행계획을 변경해야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절차는 이행하지 않음
- ※ 기본계획 승인된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

< 표 3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실시설계 보고서</li> <li>②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li> <li>③ 설계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원도</li> <li>- 설계도면</li> <li>- 축소도면</li> </ul> </li> <li>④ 설계예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서</li> <li>- 일위대가표</li> <li>- 단가산출서</li> <li>- 수량산출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각종 인허가 자료</li> <li>⑥ 각종 협의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의견수렴</li> <li>- 전문가 자문</li> </ul> </li> <li>⑦ 관리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확정</li> <li>- 부문별 운영계획</li> <li>- 부문별 유지관리계획</li> <li>- 운영수지 분석</li> <li>- 홍보마케팅 계획</li> <li>- 연계활성화 계획</li> </ul> </li> </ul>
---	--

## 시행계획수립 세부사항

- 시행계획 내용은 실시설계와 관리운영계획으로 구분
- 실시설계는 공사를 가능하게 하는 상세 설계에 대한 문서 또는 서류, 도면을 작성
- 관리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
  - 관리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확정 : 시행할 관리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제시
  - 부문별 운영계획 : 조직, 인력, 시설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 제시
  - 부문별 유지관리계획 : 시설, 서비스, 환경·위생, 안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유지관리계획 제시
  - 운영수지 분석 : 기준사례시설을 설정함으로써 예상입장객 수나 운영예산 등 예측
  - 홍보마케팅 계획 : 인터넷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등 교류행사, 관광루트 개발 등 적용 가능한 홍보전략 마련
  - 연계활성화 계획 : 주민참여, 주변 마을 및 농촌관광 관련시설과 소프트웨어적인 연계방안 도출

## 시행계획수립시 행정절차 이행사항

### 시장·군수

- 시행계획수립 시 관련 법령·기준이 해당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사항에 따라 다음 <표 4 - 시행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사항(예시)>와 같이 추진 (<붙임 3 - 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사항 설명자료>)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사업대상지구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 허가·승인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한 관계부서 및 기관과 사전협의 진행

-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규모에 해당되는 평가방식을 결정하고 시행계획수립 허가·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사업의 승인·인가·허가 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립) 사업대상지구가 공유재산 또는 국·공유지에 포함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기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검토, 필요시 추진

< 표 4 - 시행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사항(예시) >

구 분		이행 대상	이행시기
필수 이행사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준함)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 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별표3)에 준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별표4)에 준함)	
해당 시 이행사항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권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별표1)에 준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수립	○ 금액기준 : -취득 : 20억원 이상 -처분 : 10억원	○ 공유재산으로 취득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까지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기준(토지만 해당)</li> <li>- 취득 : 1건당 1천㎡ 이상</li> <li>- 처분 : 1건당 2천㎡ 이상</li> </ul>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
산지전용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지역·조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준함</li> </ul>	
농지전용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농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준함</li> </ul>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 시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기타사항

- 시행계획수립 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특히, 저수지 수변 및 하천주변의 개발인 경우 하수도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공사추진 시에는 환경피해 저감대책 마련 등 공사 중 안전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주변지역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

### 3 사업시행 및 준공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시장·군수)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 사업시행(<별지 제5호 서식 -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 담당시공사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
- 사업시행은 당해 연도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 도서에 맞게 실시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 또는 위탁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규정(감리규정)을 준수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별표5]에 의함
- 사업시행자(시장·군수)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원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 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해 시공 전·중·후 현장 사진을 보관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 신청(<별지 제6호 서식 - 준공결과보고>)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 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
  - 시장·군수는 인수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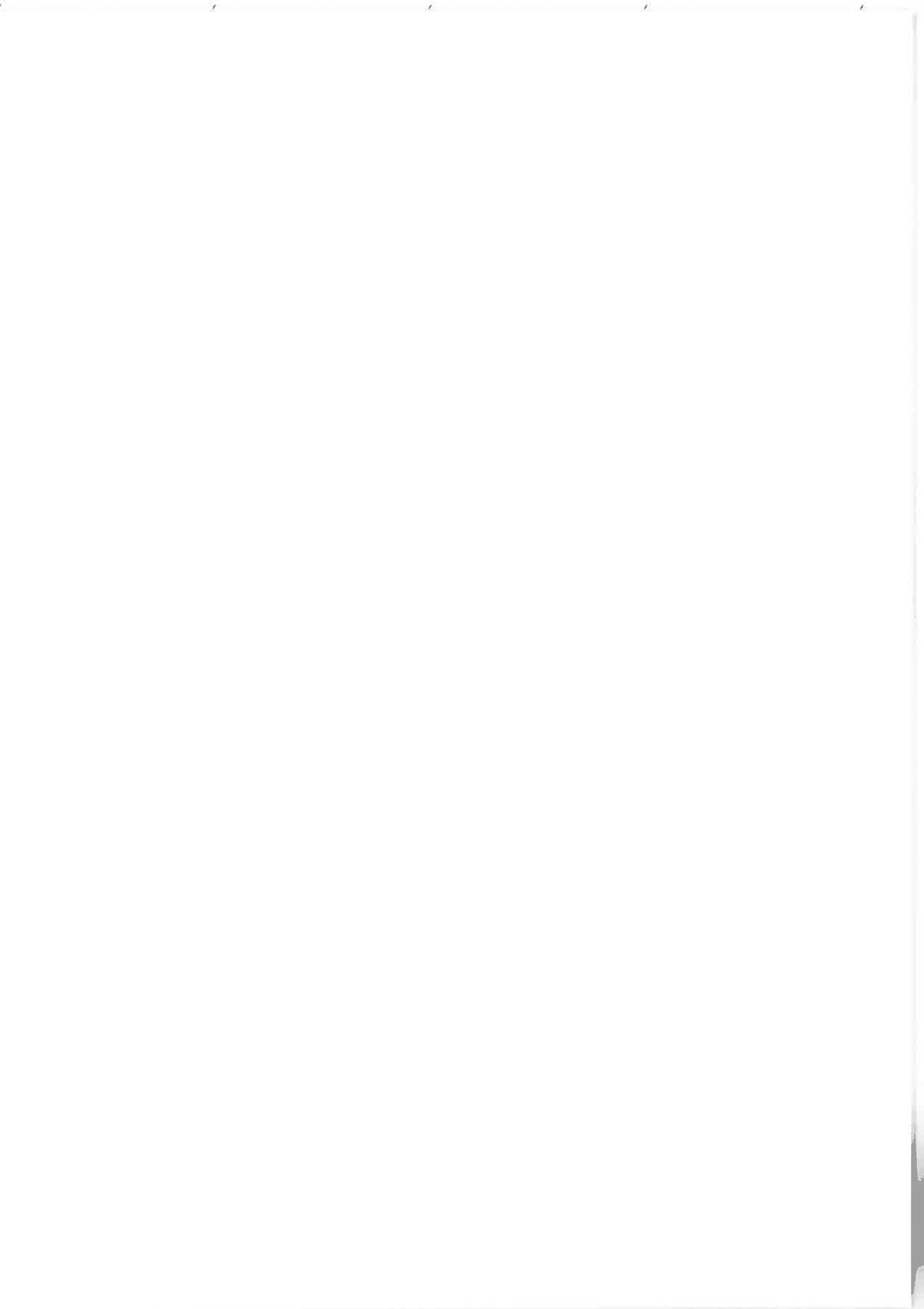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준공검사 실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농림축산 식품부에 보고
  -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 검사 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 가능
- ※ 단,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한 경우는 위탁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제119조에 따라 필요시 농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IV. 사업운영단계**



# 1 관리 및 운영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농촌테마공원의 준공 및 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의 개장 전 관리운영 사항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설의 운영에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여 개장
  - 시장·군수는 시설의 기본사항 및 개장 일시를 지역 내 공시 및 홍보함
- 시장·군수는 개장 후 주요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 등 운영 상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사업지구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관리운영계획 내용을 기본으로 개장 전 관리운영체제를 구축,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각의 시설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 (1) 관리운영 체제 마련

- 시장·군수는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관리운영조직은 시설의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관리운영방식 (표 5 - 유형별 관리운영 방식의 사례(예시))을 검토·적용하여 구성
  - 시설의 성격 및 관리운영에 요구되는 기술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 주체를 정하고 가급적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시장·군수는 농촌테마공원 운영 관련 시·군 담당부서, 관리운영담당자 등 유지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할 수 있는 유지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제 구축
  - \* 유지관리협의체는 시·군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공무원), 농촌테마공원 운영자(조직), 시설관리책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표 5 - 유형별 관리운영 방식의 사례(예시) >

구 분	내 용
시·군 직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시설이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공원형 시설이거나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시·군에서 직접 주도하여 운영</li> </ul>
	<p>상근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 상주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리 또는 관리인력 고용을 통한 시설 관리운영</li> </ul>
	<p>비상근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 상주하지 않고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관리 인력 파견 또는 지역주민 등 일시 고용을 통한 시설 관리운영</li> </ul>
위탁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성격상 전문적인 관리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기해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li> <li>- 시설 전체위탁과 부분위탁 등으로 운영 가능하며 위·수탁 계약을 통한 운영방식 체계를 정립</li> </ul>
	<p>공공 산하 기관(단체)에 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시설관리공단, 공공에서 운영하는 관련 재단 등 공적 산하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li> </ul>
	<p>지역 내 민간사업자 또는 단체에 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관련 전문성을 가진 지역 내 민간사업자(농업 생산 또는 체험사업 운영, 숙박 및 식음 분야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협.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li> </ul>
	<p>인근 마을 및 권역에 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테마공원과 인접한 마을 또는 권역의 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법인 또는 협.단체가 설립 되어 있는 마을 또는 권역)에 위탁 관리운영</li> </ul>
기타 혼합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직영 + 시설의 부분 위탁 방식</li> <li>○ 시·군 직영 + 시설의 부분 임대 방식</li> <li>○ 민간 위탁운영 + 시설의 부분 임대 방식 등</li> </ul>

##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활용

### ① 유지관리 기본방향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 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민간자본 투자로 조성한 시설 및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농촌테마공원 전체의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지도·감독하도록 함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건축물, 조정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시설물의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함
- 시설의 유지관리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건축법」 제35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법의 규정에 유의하여 관리

### ② 유지관리의 범위

- 유지관리의 범위는 각 시설물을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유지, 보수 등의 활동사항으로 함
- 각 시설물의 기능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환경에 관한 관리 등을 위한 수시, 일상 및 정기적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자는 시설물 인수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점검 계획과 결과, 대책수립과 조치사항 등을 세밀하게 기록·관리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가 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
  - 유지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연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책정하여 구성항목별로 관리

### ③ 시설별 유지관리 및 활용

#### ① 기반 및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 공원 내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일상 및 정기점검 시행
  - 일상점검은 일상순시 및 관찰, 화장실 및 휴지통 등의 청소를 포함하여 벤치, 음수전 등 이용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시설의 청소 등을 포함
  - 정기점검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도장, 안내해설판 및 도로·산책로 등의 포장면 등의 청소, 건물 내의 소모품(전구, 수도꼭지 등)의 점검 및 교환 등을 포함
- 기반시설의 점검·관리
  - 급배수시설은 일정한 인력과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급수펌프의 성능이 항상 정상인 되도록 관리
  - 배수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의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 유량이나 농도에 따라 조정
  - 진입도로 및 주차장은 포장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이용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 등을 제거
- 편의시설의 점검·관리
  - 휴지통, 파고라 및 벤치 등은 청결 정도를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
  - 음수대는 청결유지를 위해 연 2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 ② 체험·휴양시설의 관리와 활용

- 농촌테마공원 내 조성되는 체험·휴양시설(전시, 체험, 판매 등의 건축시설 또는 야외구조물 등)은 시설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활용을 고려하여 관리 및 운영
  - 다각적 활용이 가능한 체험·휴양시설은 농업 생산 및 가공체험시설, 홍보관 및 학습전시관, 야영장, 농특산물 판매장, 산책로 및 탐방로 등
  - 시설의 활용은 지역주민의 운영 참여를 통한 소득 및 고용기회 창출 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장려

○ 농촌테마공원 내 체험·휴양시설의 운영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유형의 시설활용방안(표 6 - 유형별 시설 활용 사례(예시))을 검토하여 다각적인 운영 활성화 도모

\* 농촌테마공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비용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내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사업' 예산으로 별도 추가 신청 가능

< 표 6 - 유형별 시설 활용 사례(예시) >

활용 유형	시설 활용 사례	
	<p>제천 한방엑스포공원의 아름다운 주말장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주 무대였던 제천 한방엑스포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주말장터' 장소로 활용을 통한 시민 참여 및 이용 유도</li> <li>-2014년 제천시의 각종 시민사회단체로 '아름다운장터 운영협의회' 구성,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엑스포공원에서 주말장터 개최</li> <li>-주요 프로그램은 벼룩시장, 먹거리 장터, 프리마켓, 재능 기부 공연 등</li> <li>-시민사회단체 주도의 의미 있는 지역행사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전한 소비문화 및 여가공간으로서 활성화</li> </ul>
<p>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을 통한 시설활용</p>	<p>일본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의 직거래 장터 '아침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은 1984년 도쿄도 아다치구청이 조성 이후 직접 관리해오다 운영효율화를 위해 위탁체제로 전환,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3개 업체를 선정해 공동으로 관리</li> <li>○ '아사이치 시장(아침시장)'이라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공원에 활기를 띠기 시작, 도시농업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아짐</li> <li>-공원에서 생산한 농작물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규모 도시농업을 통한 농작물을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 운영</li> <li>-매월 넷째 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아사이치 시장에서는 농약과 화학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만 팔도록 규정하여 운영</li> </ul>

<p>타 시설과 연계 및 공동 마케팅을 통한 시설활용</p>	<p>남양주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문화벨트 협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주시 내 위치하는 6개 문화시설(실학박물관, 남양주 종합촬영소, 남양주역사박물관,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다산유적지, 몽골문화촌) 활성화 및 공동 홍보를 위한 협약 체결</li> <li>○ 6개 기관 공동으로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시설 활용 방안 추진</li> </ul>
<p>주민 및 마을공동체 창업공간으로 활용</p>	<p>진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콤플렉스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를 지역주민·공동체를 위한 복합 콤플렉스로 조성</li> <li>○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이후 운영의 권한은 민간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만들기 관련 단체 및 농촌창업 관련 단체 입주</li> <li>-위탁 운영주체는 마을·단체·주민에 대한 수시 상담, 행정 위탁사업, 단체 자체 사업, 지원센터 입주단체 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하며 부대사업으로 시설관리, 마을만들기 행정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li> </ul> </li> </ul>
	<p>한국도로공사의 꿈꾸는 휴게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도로 휴게소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매장 운영 우수 아이템 공모 추진</li> <li>○ 공모전에 선정된 아이템에 대하여 최대 1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창업공간을 제공,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체험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창업아이템 : 기존 휴게소 메뉴와 차별화된 간식 또는 식사류 판매</li> <li>-지식 창업아이템 : 휴게소에 적용 가능한 공예, 그림, 패션 소품 등 제작·전시·판매 등</li> </ul> </li> </ul>



<p>운영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통한 운영 활성화</p>	<p>농어촌체험 마을사무장 역량강화교육</p>	<p>○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마을관리 역량을 배양 하기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의 역량강화교육 - 농어촌사업 및 사무장제도의 이해, 체험객 관리요령 등</p>
--	-----------------------------------	--

### ③ 조경 및 식생 유지·관리

- 조경수목 및 식물의 유지·관리는 생장, 번식 등을 계속하는 생물로서의 생리·생태적 특성과 공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시행
  - 교목 및 관목류, 초본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관리 활동 시행
  - 산림 휴양지 및 습지지역은 가급적 인위적인 전정 등을 배제하고 자연형성 과정을 통하여 식생의 자연적인 천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
  - 지주목과 당김줄 설치 : 잣 이식한 수목이나 천근성 수목은 수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목이나 당김줄을 설치
  - 멀 치 : 겨울철 수목에 대하여 멀칭을 함으로써 토양수분의 유지 및 토양 비옥도 증진, 온도조절 작용
  - 관 수 : 공원 내 전 지역의 경사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식물의 고사나 잔디부분의 수분상태를 유지하도록 관수 실시
  - 전지와 전정 : 수목의 생육장애요인 제거와 수형을 다듬기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

### ④ 기타 시설 관리

- 농촌테마공원이 강·호수 등의 수변 또는 저수지 주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점검 및 환경수질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 2 사업점검 및 환류

- 사업점검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지구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완료지구에 대한 운영상황 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결과 미흡한 평가를 받은 대상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

- 사업점검 항목은 <표 7 - 사업점검 체크리스트(예시)> 참고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및 완료지구에 대해 분기별로 사업 추진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분기말 기준 익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 추진상황 점검/보고, 별지 제8호 서식 - 운영상황 점검/보고>)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운영을 위해 시·도의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및 완료지구의 사업 추진 및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를 반기말 기준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점검 결과 사업 추진 및 운영상황이 부진한 시·군에 대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익년도 농촌테마공원 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 보완대책 마련
- 사업을 추진 중인 지구는 사업점검을 통해 집행이 부진한 경우 페널티 부여(익년도 예산 신청시 감액 조정)
- \* 기타 사업이행점검, 사업평가 및 환류에 대한 사항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시행지침 적용

< 표 7 - 사업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구 분		세부 검토사항
추진상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종별 추진상황(추진진도 및 예산집행 현황)</li> <li>○ 행정절차 이행사항</li> <li>○ 사업 부진사유(애로사항) 및 대책</li> </ul>
운영 상황 점검	관리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운영계획 사항의 이행 및 변경사항</li> <li>○ 관리운영조직의 구성 및 운영 현황</li> <li>○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규정 이행사항(시설물 관리대장 작성/비치를 통한 기록관리 사항 등)</li> <li>○ 시설 및 운영관리비용의 기존 목적 외 사용 등 여부</li> </ul>
	운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의 정량적 운영실적 -방문객수, 매출액, 지역 일자리 창출, 운영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실적 등</li> <li>○ 사업지구의 정성적 운영효과 -사업지구의 방문객 만족도, 지역주민 인식 등</li> </ul>
	향후 시설유지 및 운영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시설 유지관리의 예산확보 및 계획</li> <li>○ 지속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li> </ul>



## **V. 참고사항 및 관련서식**



< 붙임 1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 분	세 부 내 용	국비지원 여부
공원기반시설	•도로(진입도로, 대상지 내 도로), 공동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광장 등), 공원 관리지원시설(관리사무소, 대피 시설 등), 공원 경관시설 등	지 원
유통·공급 및 환경기초시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편의시설	•파고라, 벤치, 안내판, 음수대, 전망대, 다목적 체육시설 등	
체험·휴양시설	•학습전시관, 홍보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이후의 시행계획수립과 제반사항에 소요 되는 경비(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진입도로 조성 부지 매입	•진입도로 조성에 해당하는 부지의 매입비는 국비 보조 율 25%로 지원(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위락시설	•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피크닉장 등	지원 불가 (시·군 자체 비용으로 추진)
판매시설	•농특산물 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음식점, 카페 등	
숙박시설	•펜션, 방갈로, 야영장 등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계획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문화재지표조사 등 포함)	

< 붙임 2 >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착안사항

구 분		세부 검토사항
1. 입지 여건	1-1. 부지확보 여부 및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li> <li>○ 매매계약서, 사용승낙서, 자금확보 또는 자금동원 능력 등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전까지 부지확보가 가능한지를 판단</li> </ul>
	1-2. 법적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등 토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li> <li>※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지역 지구 해당여부 확인가능</li> </ul>
	1-3. 사전 행정절차 이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기본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사항 참고)</li> <li>○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경우 이행계획을 첨부하고 그 이행계획의 실천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li> </ul>
	1-4. 장소적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을 감안할 때 입지여건이 안 좋은지를 확인</li> <li>※ (예) 관광목적사업에 관광객 내방이 어려운 입지 선택 등</li> </ul>
2. 사업 의지	2-1. 사업담당 실무 책임자의 사업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자 이상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감안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li> </ul>
	2-2. 지역주민 사업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추진 의지 및 참여도 등을 파악</li> </ul>
	2-3. 사업추진주체 또는 보조사 업자 대표의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시·군 직접수행사업은 시장·군수의 당해 사업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고,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경우는 보조사업자 대표의 의지를 파악(청문을 통해 파악)</li> </ul>
3. 투자 계획의 적정성	3-1. 목표달성을 위한 규모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과 세부사업 용도의 부지 및 건축물의 크기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li> </ul>
	3-2. 보조사업자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지는 신청현황, 의향조사 또는 설문조사결과 등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조사결과가 없는 경우는 주변상황을 종합하여 판단</li> </ul>



	3-3. 자부담 능력	○지자체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여부
	3-4.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합리성	○건축 및 부지조성 단가가 현실성이 있는가를 평가 ○사업비 세부내역 및 지방비 등의 확보계획이 구체적인지 등을 검토
4. 사업 효과	4-1. 투입대비 산출 효과분석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는 서면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만 인정
	4-2. 투자대비 편익 분석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을 하였다면 그 분석은 적정하였는지(과대, 과소평가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체크)를 파악하고, 분석을 한 실적이 없다면 투자와 편익의 정도를 파악한 후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
5. 민원 발생	5-1. 민원발생 가능성	○사업대상지 주변의 여건 및 목적사업과의 관계를 살펴 민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해 평가
6. 사후 관리 계획	6-1. 관리운영계획 수립 여부	○사업지구 완공 후 해당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파악
	6-2.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시설의 운영관리주체 결정 여부 및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등을 판단 ○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의 세부실행계획이 타당성 있게 수립되었는지 등을 파악 * 사후관리자의 능력, 발생비용 조달계획 등을 검토
7. 포괄 보조 사업 가이드라인	7-1. 지원대상 사업인지여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지원대상 해당여부 검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지침 상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7-2. 예산신청 불가 내용 포함여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제시된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중 예산신청 불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8.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사업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검토의견을 200자 이내로 요약 * 전문가 검토결과 자료 : 별첨으로 첨부

< 붙임 3 >

## 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사항 설명자료

### □ 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법 제9조</li> </ul>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li> <li>1. 정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li> </ul> </li> <li>2. 개발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li> </ul> </li> </ul>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2조 제2항 [별표 2]</li> <li>•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 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 초기단계에서 실시</li> </ul>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장, 승인기관장]</li> <li>2.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대상계획 제안자→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li> <li>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li> <li>4. 심의 결과 공개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li> <li>5. 주민의견 청취 [대상계획 제안자]</li> <li>6.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제출 [대상계획 제안자→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협의기관장, 승인기관장, 해당지역 유역환경청 및 시·도 및 시·군·구]</li> <li>7. 주민의견수렴(공람 및 설명회 개최) [대상계획 제안자]</li> <li>8.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공개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li> <li>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계획 제안자→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협의기관장, 승인기관장]</li> <li>1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협의기관]</li> <li>11. 협의내용 통보 [협의기관→주관행정기관]</li> <li>12.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 [주관행정기관→협의기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행정(계획수립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 환경부장관</li> <li>- 주관행정(계획수립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 행정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li> </ul> </li> <li>•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환경부)</li> </ul>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li> </ul> </li> <li>•입지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li> <li>-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li> </ul> </li> <li>•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기본계획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 [별표 1])</li> </ul>

□ 문화재지표조사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지역안에 건설공사 시행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하는 것</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li> </ul>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 및 건설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수립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li> <li>· 3만 제곱미터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은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할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지표조사를 시행</li> </ul>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li> <li>·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지표조사를 실시</li> </ul>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에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도록 함</li> <li>·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에 따라 추진</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li> <li>2.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3.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li> <li>4.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로 인한 매장문화재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기록으로 남기고자 발굴조사를 실시</li> </ul>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행정계획	개발사업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li> </ul>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li>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li> </ul>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li> </ul>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서류 제출 [사업시행자→관계행정기관]</li> <li>2. 협의 요청 [관계행정기관→국민안전처/지역본부]</li> <li>3. 접수 및 기본여건 검토 [국민안전처/지역본부(방재부서)]</li> <li>4. 검토위원회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국민안전처/지방본부 검토위원회]</li> <li>5. 협의의견 작성 [국민안전처/지역본부]</li> <li>6. 협의의견 통보 [국민안전처/지역본부(방재부서)→관계행정기관]</li> <li>7. 조치결과 또는 계획접수 [관계행정기관→국민안전처/지역본부]</li> <li>8. 착공전 이행계획서 접수 [사업시행자→관계행정기관]</li> <li>9. 이행실태점검 [국민안전처/지역본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국민안전처)</li> </ul>
검토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li> <li>•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li> <li>•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li> </ul>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시·군·구	광역시·도	
개 념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7조		
심사대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	
심사 기관	자체 심사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 투·융자사업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융자사업
	의뢰 심사	·(시·도 심사)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신규 투·융자사업 ·(중앙 심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신규 투·융자사업	·(중앙 심사)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도의 신규 투·융자사업
심사시기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절계 용역전에 시행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		
의뢰일정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의뢰받은 심사 대상 사업이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경우 행자부장관에게 송부함 (시기는 시·도 절차 시기와 동일)
심사일정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
통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결과보고서 제출	·광역시·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	
사후평가	·자체심사한 투자사업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 받아 심사한 투자사업	

## □ 환경영향평가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별표 3]
추진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별표 3]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 전	
추진절차	1.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작성.심의 [대상계획 제안자] 2. 평가서초안 작성 [대상계획 제안자] 3. 주민의견수렴(공고공람, 설명회.공청회) [대상계획 제안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4. 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 [대상계획 제안자→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5. 평가서 협의요청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환경부 등 협의기관] 6. 평가서 검토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 협의내용 통보 [환경부→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대상계획 제안자] 8. 협의내용 재협의/반영내용 확인.통보 [협의기관→주관행정기관] 9. 착공통보(협의내용 이행) [주관행정기관→협의기관]	
평가항목	•자연생태환경 분야 : 동 ·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 분야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 분야 : 수질(지표 · 지하), 수리 · 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 · 지질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 · 진동, 위락 · 경관, 위생 · 공중 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환경 · 경제환경 분야 : 인구, 주거, 산업	•개발기본계획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li> </ul>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li> <li>•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 [별표 4]</li> </ul>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 [별표 4]</li> </ul>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서 작성 및 제출 [대상계획 제안자→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승인기관]</li> <li>2. 협의요청 :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결정 전 [승인기관→협의기관]</li> <li>3. 평가서 검토·협의 [협의기관]</li> <li>4. 평가 협의내용 통보 [협의기관→승인기관→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li> <li>5. 협의내용 반영 [승인기관,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대상계획 제안자]</li> <li>6. 공사착공 [대상계획 제안자]</li> <li>7.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승인기관, 협의기관]</li> </ol>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개요</li> <li>•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li> <li>•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li> <li>•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li> <li>•환경보전방안 등</li> </ul>	

##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예측 ·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li> </ul>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 [별표 1]</li> <li>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교통정비지역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 · 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li> <li>- 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인접한 도시 간의 유출입 교통통행량이 5% 이상인 교통생활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li> </ul>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승인 · 인가 · 허가 전</li> <li>-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 [별표 1]</li> </ul>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작성 [대상계획 제안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li> <li>2.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제출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승인기관]</li> <li>3.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사전검토 [승인기관→관련부서, 심의위원]</li> <li>4.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승인기관 소속 심의위원회]</li> <li>5.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결과 통보 [승인기관→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대상계획 제안자]</li> <li>6.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의결보완서 제출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승인기관]</li> <li>7. 심의내용 통보 [승인기관→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영향분석 · 개선 대책 수립지침 (국토교통부)</li> </ul>
분석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 · 공간적 범위</li> <li>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li> <li>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등</li> </ul>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함</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li> </ul>	
공유재산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용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li> <li>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li> <li>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li> <li>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li> </ul>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li> <li>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li> </ul> </li> <li>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li> <li>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계획 수립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적 및 용도</li> <li>2. 사업기간</li> <li>3. 소요예산</li> <li>4. 사업규모</li> <li>5. 기준가격 명세</li> <li>6. 계약방법</li> </ol> </li> </ul>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재산으로 취득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까지 받아야 함(법 제10조 제1항)</li> </ul>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통보 [행자부→시·도]</li> <li>2.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통보 [시·도→시·군]</li> <li>3.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시·도/시·군]</li> <li>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도/시·군 지자체장→지방의회]</li> <li>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심의·통보) [시·도/시·군 지방의회→지자체]</li> <li>6. 공유재산관리계획 확정 [시·도/시·군]</li> <li>7.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중요재산 취득·처분) [시·도/시·군]</li> </ol>	

## □ 산지전용허가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산지를 조립,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산지 일시사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허가 관할행정청	산지전용면적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소관 관할행정청
	200만㎡이상	100만㎡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이상 ~200만㎡미만	3만㎡이상 ~100만㎡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도지사
50만㎡미만	3만㎡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군수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li> <li>•신청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 허가의 결정</li> </ul>		

## □ 농지전용허가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농지전용은 농지법상의 농지를 경작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근거법령	•농지법 제34조		
허가 관할행정청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이상	3천㎡이상 ~3만㎡미만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0만㎡이상	3만㎡이상 ~20만㎡미만 3만㎡미만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	-	10만㎡이상 10만㎡미만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li> <li>•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허가 심사 → 농지전용허가 결정 → 허가증 발급</li> </ul>		

< 별지 제1호 서식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신청서식**

사업지구명:

1. 목 적(글자크기 16 point)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기술(글자크기 13 point)

2. 사업목표

가. 비 전(글자크기 14 point)

\* 1~2줄로 핵심만 기록(글자크기 13 point)

나. 목 표

\* 정량화 또는 수치화 가능한 경우 수치를 포함하여 기술

다. 추진전략

라. 성과지표

지 표 명	연차별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지구 매출액(백만원)						
사업지구 방문객 수(명)						
참여농가 (주민) 소득	소득(백만원)					
	농어가(주민)수(호/명)					
일자리(개)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과지표를 선택(상기 예시 외의 지표가 있는 경우 추가 가능)

\* 모든 지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만 대상으로 함

### 3. 사업내용

사업위치 : 00도 00군 읍·면 00리 00번지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민자       )

사업시행주체 : (주무관청)

사업규모 : 부지면적       m<sup>2</sup>, 건축연면적       m<sup>2</sup>(지상○층, 지하○층)

시설 및 공간별 조성계획

○ 면적, 세부 공간 기능 및 조성방안, 시설배치계획 등(도면 포함)

\* 기타 시설 및 기반시설계획 등 서술

관리운영계획

○ 사업지구의 관리운영주체 설정, 조직(주체)의 구성 및 관리활동 계획

○ 부문별 시설운영계획 등

○ 운영 프로그램계획

-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이벤트 계획, 지역연계 프로그램 계획 등

사업기간 : ○○년 ~ ○○년(00년간)

사업추진 경위

\* 사업 추진의 배경, 논의과정, 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 등을 기술

### 4. 연차별 투자계획

#### 가. 총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①토목공사	면적(m <sup>2</sup> )				
	공사비용				
②건축공사	(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사업비			
③조경공사	(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사업비			
④기 타 (부대시설 및 기타시설)	(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사업비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감리비 등					
합 계(A+B)		사업비			

#### 나. 세부산출근거

\* 세부사업별 투자액 산출근거를 기록  
(규모×단위규모당 단가 = 0000백만원)

###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합계	'15년	'16년	'17년이후
□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총 투자계획상 세부분류된 세부사업별(마지막 단계 분류기준)로 연차별 투자예정 금액을 기록

### 라. 유관사업 연계 계획

※ 유관사업과 연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명기

## 5. 기대효과

#### □ 정성적 기대효과

\* 10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 □ 정량적 기대효과

\* 5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 6. 시·도 검토의견

### ① 광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광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④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 별첨 : 사업기본계획서,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 별지 제2호 서식 >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2.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선정 :
- 기본계획수립 :
- 행정절차 이행 :
- 의견수렴 :
- 인허가 등 :

3. 테마공원 조성계획

구 분	총 규모 및 내용	년차별계획				비 고
		'00년	'00년	'00년	'00년	
계						
○ 기초기반시설						
- 도로						
- 상·하수도						
- 공동이용시설						
- 관리시설						
-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공원조성						
- 학습전시관						
- 산책로						
- 공연장 등						
○ 위락시설						
- 피크닉장						
- 음식점						
- 야영장 등 숙박시설 등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 4.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공 사 비 - -				
○ 자 재 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관련문서 첨부

< 별지 제3호 서식 >

**시행계획수립 시 의견수렴 및 조치사항**

지구명	의견제시자 (기관)	의견제시 및 조치계획		비 고
		의견내용	반영사항	

※ 전문가 자문의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것.

< 별지 제4호 서식 >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

3. 테마공원 조성계획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B-A)	비고
		총규모 (A)	'00까지 완료	'00이후 계획	총규모 (B)	'00까지 완료	'00이후 계획		
계									
○ 기초기반시설	m <sup>2</sup> m 동								
- 도로									
- 상·하수도									
- 공동이용시설									
- 관리시설 -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공원조성									
- 학습전시관									
- 산책로									
- 공연장 등									
○ 위락시설									
- 피크닉장									
- 음식점									
- 야영장 등 숙박시설 등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 4.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공 사 비				
-				
-				
○ 자 재 대				
○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 보 상				
○ 관 리 비 등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관련문서 첨부

< 별지 제5호 서식 >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1. 총괄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 명	승인 액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1/4			2/4			3/4			4/4										
					당 년	누 계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합계																										

## 2.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구명 : . . .
- 기본계획확정 : . . .
- 시행계획승인 : . . .
- 사업시행기간 : ~

수입

(단위 : 천원)

구분	승인액	년차별 추진계획			비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계					
○보조					
-국고					
-지방비					
○민자					

지출

(단위 : 천원)

구분	승인액	년차별 추진계획			비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계					
○공사비					
-					
-					
○자재대					
○용지매수비					
-용지매수					
-보상					
○관리비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예비비					
○기타					



< 별지 제6호 서식 >

## ○○테마공원 조성사업 준공결과보고

###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시공회사 :

### 2.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선정 :
- 기본계획승인 :
- 시행계획승인
- 행정절차 이행 :
- 인허가 :
- 공사착수 / 사업준공 등 :

### 3. 테마공원 조성계획

구 분	단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증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계								
○ 기초기반시설 - 도로 - 상·하수도 - 공동이용시설 - 관리시설 -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공원조성 - 학습전시관 - 산책로 - 공연장 등								
○ 위락시설 - 피크닉장 - 음식점 - 야영장 등 숙박시설 등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 4.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증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계							
○보 조							
-국 고							
-지방비							
○민 자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증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계							
○공 사 비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 5. 기타 첨부서류(「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에 준한 첨부 서류 및 도면)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 시설물배치와 시설현황도
-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준공사진을 포함한 준공도서
-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등

< 별지 제7호 서식 >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점검/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주요테마 :
- 추진현황

계 획	설 계		승 인		발 주		공 사	
	설계중	완료	미승인	승인	미발주	완료	공사중	완료

2. 공종별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착수 년도	주요사업	총 사업비	'00까지	'00계획			누계 실적	'00이후	비고
				계획	실적	진도 (%)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관리시설								
	편의시설								
	공원조성								
	학습전시관								
	산책로								
	공연장								

※ 주요사업은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 당해연도 실적은 공사추진 진도를 기재하되, 자금집행내역을 ( )외서로 별도 기재

### 3. 행정절차 이행사항

구 분	기 간		주요내용
	시작일	종료일	
기본계획수립			
사전사업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			
문화재지표조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도시·군관리계획(변경)			
토지매입			
시행계획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			
환경영향성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성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산지·농지 전용허가			
사업시행 인가			
공사시행			
사업준공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 4. 사업 부진이유(애로사항) 및 대책

구 분	주요 부진사유(애로사항)	향후 대책

※ 구체적으로 작성

< 별지 제8호 서식 >

**○○테마공원 조성사업 운영상황 점검/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주요테마 :
- 개 장 일 :
- 운영주체 :
- 운영조직 구성 및 인력 :

2. 관리운영현황

관리운영 변경사항

구 분	기존 관리운영계획	변경사항
관리운영항목		
조직구성 및 운영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규정		

※ 사업지구별 관리운영계획수립 내용을 기초로 함

관리운영 규정 이행사항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시설물별 유지관리					
안전관리					
관리대장 작성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관리운영 소요비용

○ 재원조달 : 공공재원, 자체운영수익 등

(단위 : 천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																						
기타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 3. 운영실적

방문객수

(단위 : 명)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사업지구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총 매출액																						
항목별 매출액	입장료																					
	체험프로그램																					
	임대료																					
	판매시설																					
	숙박시설																					
	기타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지역 일자리 창출

(단위 : 명)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운영프로그램 및 홍보·마케팅 추진실적

프로그램 / 행사명	주요내용	시기 / 횟수	비고

운영효과

- 방문객 설문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결과 등 정량적·정성적 자료 첨부

4. 시설 유지 및 운영활성화 방안

- 시설 유지관리 예산확보 계획 첨부
- 사업지구 유지관리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 첨부

## ■ 기타 관련 정책사업 가이드라인 사례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에 참고 및 적용 가능한 타 부처 정책사업 지침 또는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 사업의 추진특성 및 지역여건 등에 따른 유형별 사업추진지침 적용사례
  - 입지선정에서 관리운영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단계별 사업시행지침 적용사례
  - 세부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출한 사례

[사업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사례]

구 분		주요 검토내용
사업 유형화	연안유희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유희공간의 위치, 주변여건 및 해역별 특성에 따라 시설유형을 구분하였고 통일성 있고 차별화된 시설조성을 위한 유형별 조성지침 제시함</li> <li>- 해양리조트형, 휴양요양형, 어촌체험형, 해양생태형, 레포츠형, 해양문화공간형 등으로 구분함</li> </ul>
	2013년 학교숲 조성사업 시행지침 (안전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숲 조성 대상지의 특성과 이용목적에 따라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함</li> <li>- 경계형, 근린녹지형, 환경조절형, 전문학습원, 역사문화형 등으로 구분함</li> </ul>
추진단계별 지침수립	저탄소 녹색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녹색관광자원개발 시 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 등 4단계에 적용되는 방향 및 원칙의 최소기준치를 제시함</li> <li>- 각 단계별 고려사항 및 조성방향성을 제시함</li> </ul>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원 개발의 입지선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각 단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을 권고하는 사항을 제시함</li> <li>- 각 단계별 개발지표, 해설, 기준, 참조사항 등을 제시함</li> </ul>
사후관리 및 평가사항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안전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사항에 대한 세부방안, 사업 추진실적 평가내용 등을 제시함</li> <li>- 중간지원기관 활용, 사전 교육 프로그램, 사후관리, 평가방법 및 내용예시 등을 제시함</li> </ul>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검토 절차 및 방법, 사업추진 성과평가항목</li> <li>- 계획서 검토서(안), 정량정성적 평가지표(안) 등을 제시함</li> </ul>



## 가. 사업유형화 관련 사례

### 1) 연안유희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유형별에 따른 시설조성 지침]

구분	배치 및 위치	규모 및 형태	재료 및 색채
해양 리조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욕장, 해안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li> <li>- 산책로·레저공간 등 주변 친수 시설과 연계하여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높이, 색채 등 주변환경 및 주변경관 고려</li> <li>- 해안으로의 접근방법, 바다 및 바닷가 이용빈도 고려</li> <li>- 친수계단 조성 시 이용자의 접근성, 안전성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구성이 좋고, 물에 의한 부식 방지 재료</li> <li>- 자갈, 모래, 돌 등 해안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재료</li> <li>- 편안하고, 안정된 색채를 선정하여 통일된 색채 이미지 적용</li> <li>- 페인트 마감 지양, 원재료가 가진 색채를 통해 공간 이미지 표현</li> </ul>
휴양 요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적 가치가 높거나 지역적 특색을 지닌 이색경관 위치에 설치</li> <li>- 해안으로의 조망이 해안으로의 접근 보다 유리한곳에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망대상의 중요도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조망거점 설정</li> <li>- 이용자의 접근성, 경관성, 안전성 고려</li> <li>- 지역의 대표 경관을 조망하는 장소인 경우 돌출형 조망시설 설치</li> <li>- 테라스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독창적인 디자인 적용</li> <li>- 장애인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목재, 석재 등의 재료를 사용</li> <li>- 바닥포장, 난간, 벤치 등의 기초적인 시설물은 항만전체의 디자인에 따라 일관성 있는 재료 및 색채 사용</li> <li>- 특정 형태를 통해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경우 형태의 모티브에 적합한 강조색을 적용</li> </ul>
어촌 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어촌, 어항을 중심으로 조성</li> <li>-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조망, 산책이 가능한 친수시설과 연계하여 조성</li> <li>- 호안 상부 및 하부, 방파제 상부, 여객터미널 및 물양장 주변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촌관광과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책로 조성시 포장 등을 지양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성</li> <li>-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시 별도공간을 마련하여 배치</li> <li>- 휴게시설의 디자인은 해안별 특성을 상징할 수 있도록 디자인</li> <li>- 휴게시설의 높이는 사람의 키와 사용재료, 주변경관, 태양의 고도 및 방위각 등을 고려하여 결정(높이는3m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 석재 등 자연적 재료를 활용하여 안정된 분위기 조성</li> <li>- 시설주변 녹화를 통해 푸른 이미지 형성</li> <li>- 바다와 주변 전체의 디자인과 통일성을 줄 수 있는 색채, 재료를 선정</li> </ul>
해양 생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가치가 뛰어난 지역에 대한 절대보존 공간을 설정하여 이용자에 의한 훼손을 방지</li> <li>- 인공형과 자연형으로 구분하여 조성</li> <li>- 인공형은 해양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li> <li>- 자연형은 해양생태계 서식처를 조성하여 조망위주의 간접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태계와 친화적이며 생태서식이 가능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li> <li>-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li> <li>- 본래의 색조와 주변 환경간에 통일감을 줄 수 있는 재료 사용</li> </ul>

<p><b>해양 레포츠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관광명소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관광객, 어업인의 이용이 활발한 지역에 배치</li> <li>- 해양 레저스포츠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지와 인접하게 설치</li> <li>- 연안유휴지를 활용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센터의 설치를 통해 저가형숙박이 가능하도록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저스포츠센터 설치시 주변 진입동선과 이용자의 특성 고려</li> <li>-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규모 및 형태 고려</li> <li>- 영구시설 또는 임시시설의 설치 여부 검토 및 난개발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저스포츠센터는 상징적이고 활발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li> <li>- 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디자인 도입으로 조화로운 공간 이미지 부여</li> <li>- 자연적 요소를 활용하여 쾌적한 분위기 조성</li> </ul>
<p><b>항공 레포츠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구역 지정협약이 완료된 곳</li> <li>- 주변 장애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을 배치</li> <li>- 관광명소와의 연계가 용이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착륙에 적합한 규모 결정</li> <li>- 이용자의 접근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규모 및 형태 결정</li> <li>- 주거밀집지역이 있을 경우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착륙장 구역을 잘 실별할 수 있도록 설치</li> <li>- 이·착륙장 주변의 풍향·풍속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풍향지시기 설치</li> </ul>
<p><b>해양문화 공간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테마의 각종 축제, 문화행사가 주가 될 수 있는 위치 선정</li> <li>- 휴식공간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li> <li>- 주변 자연경관의 조망이 용이한 지점에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마공원, 테마 전시관, 테마 박물관 등 해안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규모로 설정</li> <li>-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테마형 해양교육공원으로 발전시켜 조성</li> <li>- 교육탐방로의 경우 탐방표지를 설치하고 안내서 등을 발행</li> <li>- 교육형 벽화 및 호안 갤러리를 조성하여 생태적 또는 문화적인 이미지를 적용</li> <li>- 교육형 벽화 및 호안 갤러리 조성시 설치공간 주변 구조물과 어울리도록 통합하여 설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별 다른 색채를 도입하여 공간의 특성을 구분</li> <li>- 재료 본래의 색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입면 벽화의 경우 도색 및 조형물 부착에 의해 쉽게 인지되는 재료를 사용</li> </ul>

## 2) 2013년 학교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안전행정부)

### [학교숲 조성시 고려사항]

구분	주의사항
<p><b>자연성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스러운 숲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성을 떨어뜨리는 조형적이고 장식적인 시설물의 설치의 지양</li> <li>- 개별 수목들이 자연스러운 수형이 유지되도록 조성하고 식재수종은 향토수종, 교목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성</li> </ul>
<p><b>기능성 실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숲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야외숲과 비탈숲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 범위내에서 휴게시설을 마련</li> <li>- 수목의 편익시설은 인공재료를 가급적 지양하고,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li> <li>- 소음방지, 기후조절, 정서함양, 시각차폐 등 숲이 갖는 기능을 강화</li> </ul>
<p><b>교육성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설계 및 조성</li> <li>- 학교숲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li> </ul>

[학교숲의 유형 구분과 내용]

대유형	유형		구체적 내용
	소유형		
경계형숲	공동경계숲		- 인접건축물과 공동으로 담장을 쓰고 있는 곳에 조성할 숲
	단독경계숲		- 학교가 도로, 마을, 건축물 등과 단독담장으로 경계인 곳에 조성할 숲
근린 녹지형숲	비탈숲		- 교외 야산과 경계한 비탈면, 교내 비탈면에 조성할 숲
	야외숲		- 교내 소외지 혹은 버려진 공간에 조성할 숲
	모퉁이숲		- 학교 안의 모퉁이, 공지에 방치된 공간에 조성할 숲
	미래숲		- 교문으로부터 본관, 주요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조성할 숲
	화단숲		- 기존 화단이나 주차공원 등에 폭을 넓혀 조성할 숲
환경 조절형숲	소음방지숲		- 철도변, 도로변 등 소음원이 발생하는 곳에 조성할 숲
	시각차폐숲		- 학교주변에 혐오시설물 등을 시각적으로 조절하고자 조성할 숲
	기후조절숲		- 바람이나 먼지로부터 학교 환경보호(공장지대 등)를 위해 조성할 숲
	중정원		- 건물 사이 중앙에 있는 공간에 조성할 숲
전문 학습원숲	학습원		- 자연관찰원, 학습원, 재배장, 사육장 등을 활용하여 조성할 숲
	화목원		- 장미, 작약, 수수꽃다리 등의 꽃나무로 조성할 숲
	향기원		- 향기를 낼 수 있는 자생식물, 야생화 방향식물로 조성할 숲
	식물원 또는 수목원		- 기존의 숲의 형태를 갖춘 곳을 활용하여 식물원, 수목원으로 조성
역사 문화형숲	학교전통숲		- 역사와 전통에 연관된 요소를 숲 환경에 가미하여 조성할 숲
	문화유적숲		- 인근에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숲조성에 반영하여 조성할 숲

## 나. 추진단계별 지침수립 관련 사례

### 1) 저탄소 녹색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 연구(문화체육관광부)

[단계별 지표에 따른 시설조성 기준]

구분	단계별 지표	기준
입지선정 단계	- 자연 및 역사문화 보존지역 입지 제한	- 생태 및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높고 훼손되기 쉬운지역은 개발대상지 제외 - 지역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계를 결정
	- 생태녹지축 고려	- 산, 논, 밭, 하천, 습지 등 생태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입지를 선정 - 생태녹지축을 개발대상지에 포함하는 경우 원형 보존녹지로 설정하여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지형 및 지세 고려	- 자연배수가 잘되고 임반이 적게 분포하여 공사여건이 양호한 지역 선정 - 과다한 절성토량이 발생하는 지역은 입지 제한
	- 지역교통체계 고려	- 광역교통의 현황 및 향후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양호 및 간선시설 설치가 용이하거나 불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계획 수립 단계	토지 이용	- 신재생에너지 도입여건 고려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공급과 입지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여건 고려
		- 자연재해 발생가능성고려	- 재해발생 위험지역이나 재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입지를 제한 -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개발제한사향이 없거나 지장물이 적고 이주대책이 용이하며 민원유발이 적어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	- 개발제한사향이 없거나 지장물이 적고 이주대책이 용이하며 민원유발이 적어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고려	- 장래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하와 이에 대한 대책 등을 고려 - 주변지역과의 전체 환경이 교란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지를 결정
	- 자연순응형 계획 수립	-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자연순응형 개발계획 수립 - 지역미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등은 신중하게 파악한 후 개발 가능한 지형을 설정	
	- 원형보존 녹지 설정	-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녹지는 개발을 원칙적으로 제한 - 불가피하게 개발대상지에 포함할 경우 원형 녹지로 존치시켜 보존지역으로 설정	
	- 아름다운 경관 조성	- 개발대상지 내외부의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자원의 조사, 경관영향 분석 등을 실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아름답고 특색있는 경관 조성	
	- 집약적 공간구조 형성	-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대상지구의 개발규모와 입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녹지체계 구축	- 개발면적의 30%이상을 녹지면적으로 확보 - 대상지 내 분산된 녹지가 최대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녹지체계 구축	
	- 비오톱 및 생태이동통로 조성	- 생물 다양성을 제고하고 각각의 서식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결합하는 비오톱을 조성 - 불연속된 생물서식공간은 상호연결하고, 분할하는 경우는 비오톱 간 교류촉진을 위해 등간격으로 배치 - 주변지형, 생태적 연속성, 안전한 생물의 이동을 위한 통로의 은폐와 보조시설 설치 등을 고려	
- 절성토 최소화 및 생태복원	- 절토사면과 토공량의 발생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면과 절토지역은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생태복원방법을 도입		
- 탄소저감 식재계획 마련	-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을 적극 활용 - 탄소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생밀도를 강화하고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을 높여 다층적 식재구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조량, 채광 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릉지, 하천, 습지 등 기존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li> <li>- 일조량과 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남향으로 시설을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통로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지역의 대기흐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li> <li>- 양호한 바람환경을 창출하도록 시설의 층수, 간격, 모양 등을 적절하게 배치</li> <li>- 산림, 녹지 등 기후적으로 주요한 지역은 보전</li> <li>- 녹지축을 15~30m 이상의 폭으로 확보하여 미기후 조절 및 공기 순환의 기능을 가지도록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적성평가 도입 용도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대상지의 토지용도 구분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실시</li> <li>-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배분계획 수립</li> </ul>
계획 수립 단계	교통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도로망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과 연계된 보행친화적 도로망 구성</li> <li>- 진입도로, 주도로 및 보조도로 등은 자연친화적 생태도로로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이용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치없는 지구 도입,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설치, 대상지 내 순환버스 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제고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도로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안전성, 경관성,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로망 구성</li> <li>-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결정</li> <li>- 포장면은 투수성 탄성포장을 사용하고 적절한 간격에 명확한 색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제고</li> <li>-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또는 보관대를 설치하고 조명 장치, 주차 장치, 도난방지 장치 등을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도로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이 직접 보행하면서 시설을 관람하고 휴식할 수 있는 보행관람체계를 구축</li> <li>- 보행량, 보행속도 및 밀도 등의 보행자 척도를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주차장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주차장 면적을 산출</li> <li>- 녹지공간 또는 빗물정원 조성 등을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을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CNG(천연가스)버스,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장애 이용시설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시설이용 약자가 대상지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개별 시설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로,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 건축물 등에 경사로, 전용 승강기, 전용 화장실 등의 무장애 이용시설을 조성</li> </ul>

에너지 및 자원 순환	- 정온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 내 도로는 차량의 서행유도를 기본원칙으로 계획</li> <li>- 자동차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li> <li>- 속도저감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설치</li> </ul>
	- 신재생에너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 기상 등의 대상지 여건에 적합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검토</li> <li>- 신재생에너지 설비 간의 경관 조화성 고려</li> <li>-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li> </ul>
	-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부하량 총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공급</li> </ul>
	- 에너지 절약 가로시설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설비, 교통신호등, 공중전화 부스 등의 가로시설물에는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LED조명 등의 에너지절약 설비 도입</li> </ul>
	- 에너지 절약 건축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 절약성능이 높도록 설계하여 설치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설치</li> </ul>
	- 친환경 건축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 건축으로 조성</li> <li>- 공공건축물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우수등급(65점 이상)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li> </ul>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이용효율의 최적화와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방안을 작성</li> </ul>
	- 탄소배출 관리계획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고 탄소배출 저감실행계획을 수립</li> <li>- 실행성과 모니터링 등 탄소배출 관리계획 작성</li> </ul>
	- 환경 친화적 하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와 오수는 분리처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생활하수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자연정화 처리방안을 검토</li> </ul>
	- 우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위하여 우수의 외부유출 억제를 원칙으로 우수의 저장·활용방안을 마련</li> <li>- 공공화장실, 관리사무소, 문화시설, 전시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화장실, 조경용수, 청소용수, 분수, 스프링클러 등은 우수를 활용</li> </ul>
- 중수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 사용 및 하수 방류의 절감을 통한 수자원의 유효이용량 증대를 위하여 중수도 도입을 검토</li> <li>- 공중위생 및 기기·설비 등의 원수 및 중수의 배관에 대한 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li> <li>- 식생 여과대는 우수유출수가 넓고 주로 완충녹지대 전면에 조성하고 정화식재를 활용</li> </ul>	
- 투수성 포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불투수성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대신 기암적 공극이 있는 투수성 포장을 적용</li> </ul>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을 수집하여 종류·성상별로 철저히 분리 배출을 하고, 지역의 재활용 사업자와 협력하여 음식쓰레기 퇴비화, 열연료화를 실시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마련
순환 경제	- 장기체류 관광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대상지와 인접지역을 연계하는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관광 인프라 정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창출 등 관광객의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
	- 지역 농특산물 활용	- 농수산물의 장거리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푸드 마일리지에 적은 안전하고 신선한 국내산 및 지역산 농특산물을 구매하여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
	- 지역주민 참여 확대	-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율적인 개발역량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
	- 문화관광 녹색일자리 창출	- 전시관, 체험관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해설프로그램의 운영 마케팅 활동 등의 문화관광 녹색일 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 있는 건설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에게 고용기회를 제공
	- 지역주민 고용	- 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
	- 지연산업 연계성 강화	- 자연생태, 역사, 문화유적, 향토음식 등 지역에 적합하고 지역 특성과 역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연산업으로 육성 - 관광산업 및 인근 지역의 산업과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발휘
	- 어메니티자원의 활용	-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보존가치가 높은 어메니티자원은 자원특성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
공사시행 단계	- 공정단축 저탄소공법 확대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체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는 PC와 철근의 프리캐브 등 공정단축 저탄소공법을 확대
	- 저탄소 자재 사용	- 공사 자재는 환경부하가 적은 재료를 선택하고, 천연재료, 재활용 재료, 반복사용이 가능한 재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사용을 최대한 저감 - 인공경량 골재, 경량골재 벽돌 및 블록 등 환경친화적 골재와 무시멘트마감패널, 로이유리 등 저탄소 마감재를 사용
	- 건설 자재·폐기물 재활용	-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 폐재류를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준용하여 건설 폐재류를 100mm이하로 파쇄하여 성토재,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
	- 저탄소 건설장비 사용	- 배기가스 배출량과 연료 소모율이 낮거나 바이오디젤 등 대체 연료를 활용하는 건설장비의 사용을 늘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비를 적재 배치

<b>운영관리 단계</b>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공사시행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및 환경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
	- 표토의 보전 및 재활용	- 토양자원의 순환을 위해 양호한 표토를 공사시행시 수집·보관하였다가 생태공원 및 녹지 등의 식재지역 조성 시에 활용
	-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 작성	-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에 따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
	- 온실가스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유도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을 준용
	- 저탄소 녹색행사 개최	- 대상지에서 회의, 공연, 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는 저탄소 녹색행사를 개최 - 저탄소 녹색행사 개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상쇄, 정보공개 등은 환경부의 저탄소형 녹색행사 가이드라인 준용 - 저탄소형 녹색행사 가이드라인 :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상쇄활동을 제시하여 기관 및 단체의 저탄소형 녹색행사 개최 유도.
	- 자유로운 자전거 이용시스템 운영	- 대중교통과 연계된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자유로운 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운영
	- 환경경영 유도	- 관광호텔 등 대규모 민간 관광기업에 환경 경영을 도입하도록 유도 - 중소기업의 식당, 숙박업소 등은 지구온난화방지 모범업소 인증제를 마련하여 시행
	- 기후변화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 지구온난화 원인과 피해, 관광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및 온실가스 저감 실천사항 등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시행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용적율, 건폐율, 층고 등의 완화, 에너지 진단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세제, 기술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시행
	- 친환경 관광활동수칙 제정	- 온실가스 감축 실천의 확산을 위해 에코 드라이빙, 객실 내 적정온도 유지, 친환경 상품구매,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등 친환경 관광활동 수칙을 제정
- 탄소배출 상쇄프로그램 도입	- 대상지에서의 관광활동 및 기업경영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선택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	
-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대책 수립	- 연안침식, 하천범람, 집중호우, 가뭄, 대풍 등 극한 기후현상의 빈도와 그로 인한 관광 인프라 시설의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상재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혹서, 혹한, 태풍, 폭풍, 집중호우, 가뭄 등 극한의 기상재해 발생 시 관광객의 안전과 민간 관광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2)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합 가이드라인(안)]

구 분		지 표
입지선정 단계	대상지 입지 여건 검토	입지선호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 용이 지역</li> <li>- 주변자원 연계 가능 지역</li> <li>- 경관 쾌적성 우수 지역</li> <li>- 기반시설 기 구축 지역</li> <li>- 신재생 에너지 도입 용이 지역</li> </ul>
		입지회피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녹지축 및 수자원 주변지역</li> <li>- 주요 동식물 서식지역</li> <li>- 산정 및 급경사지</li> <li>- 지반 불안정 지역 및 재해 취약지역</li> <li>- 지역 갈등 우려 지역</li> </ul>
	대상지 부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가 및 부지매입 가능성 고려</li> <li>- 지장물 분포 정도 고려</li> </ul>
계획수립 단계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계획 부합성 고려</li> <li>- 적정 수용력 고려</li> <li>- 재무 타당성 고려</li> </ul>	
	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집약적 공간 형성 및 보존지역 분리</li> <li>- (설계) 지형 변형 최소화 및 절·성토 균형</li> <li>- (설계) 바이오툼 및 거점 소생물권 조성</li> <li>- (설계)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li> <li>- (설계) 바람길 확보</li> <li>- (설계) 물 순환 시스템 도입</li> <li>- (설계) 친환경 하수처리 및 중수시설 도입</li> </ul>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스카이라인 보전</li> <li>- (계획) 경관축 및 조망점 설정</li> <li>- (설계) 위해 경관 요소 차폐</li> <li>- (설계) 조화로운 색채 선정</li> </ul>		
계획수립 단계	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교통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보행자 중심 친환경 도로망 구축</li> <li>- (계획) 자전거 도로 및 주륜장 설치</li> <li>- (계획) 친환경 주차장 도입</li> <li>- (계획)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인프라 구축</li> <li>- (설계) 정온 환경 조성</li> </ul>
		건축물 및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 적정 규모 및 형태 설정</li> <li>- (설계)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li> <li>- (설계) 통일감 있는 디자인 도입</li> <li>- (설계) 무장애 시설 설계 도입</li> <li>- (설계) 지역 자재 및 친환경 자재 사용</li> </ul>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완충녹지 조성</li> <li>- (계획) 연결녹지 조성</li> <li>- (설계)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li> <li>- (설계) 다층식재 등 자연생태기법 도입</li> <li>- (설계) 지역 향토 수종 및 탄소 흡착 우수 수종 선정</li> </ul>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li> <li>- 지역 유희시설 활용</li> <li>- 지역 어메니티 자원 활용</li> </ul>

	관리운영계획 수립	- 관리운영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사업 중복성 저감 - 보조금 적용 기준 준수
사업시행 단계	시공 관리	- 친환경 공법 도입 -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 - 오염원 배출 관리 -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 공사장 경관 관리 - 훼손 내용 복구
	준공 관리	- 준공절차 이행
운영관리 단계	관광객 관리	- 친환경 관광활동 유도 - 재해 대응 매뉴얼 도입
	시설운영 관리	- 시설 경관 및 미관 유지 - 환경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 직원 친환경 인식 제고
	지역사회 협력	-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 및 고용 확대 - 지역산업 연계 강화

## 다. 사후관리 및 평가사항 관련 사례

### 1)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안전행정부)

[중간지원기관 평가기준]

	세부항목	평가내용
정량평가	컨설팅	- 1개 마을기업당 방문 건수
	교육	- 마을기업 대상 교육프로그램(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운영
	재능나눔	- 재능나눔기관과 마을기업 매칭 건수 - 마을기업간 또는 마을기업과 협력단체(업체) 등과의 연계 건수
	홍보	- 언론·방송·인터넷 등 홍보 건수
	관리	- 마케팅 지원(박람회, 직거래 장터 참여/개최 등) 건수 -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 건수
	만족도	- 마을기업에 대한 업무수행 만족도(지자체/마을기업대상 설문)
정성평가	업체능력	- 사업수행기관의 기획능력(자체적인 수요 발굴 등) -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전문성, 효과성 등 - 네트워킹 능력 (유관기관과의 연계, 전문기관과의 협력, 인적Pool 확보능력 등) - 참여인력의 전문성 정도(분석능력, 컨설팅 능력, 분야별 전문성 등)
	특화성	- 기관, 운영 및 지원방법의 특화성 등 (사업실행매뉴얼, 프로그램의 차별성, 공동체성 회복 기여도, 아이디어의 혁신성/독창성 등)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방법
자부담 예산의 집행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 집행과 관련된 회계서류와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위사업별, 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하고, 하위의 집행금액이 없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개괄하여 결정된 그 집행율에 따라 자부담 예산의 집행정도를 평가</li> <li>- 자부담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과 동일한 증빙자료 첨부 및 증빙자료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 불인정</li> </ul>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지침」에 예시되어 있는 처리과정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집행건에 관한 증빙 서류들의 구비 상태,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격성 평가</li> </ul>
예산변경의 적법성 및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체의 단위사업별·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계획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파악, 단체의 임의적인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나 항목을 신설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li> </ul>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근거하여 각 단계에서 집행한 사업비의 내역을 검토시 사업비 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들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집행사실은 인정되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명기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사업비의 오남용이나 부적정한 사용 여부를 평가</li> </ul>

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과평가항목]

구분	검토항목
계획서 검토서(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획수립 개요(필요성과 목적, 계획수립 주체와 추진주체, 계획 범위·방법)</li> <li>2. 지역여건과 특성(문화현황, 문화여건 및 수요(의견수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li> <li>3. 기본구상(미래상과 비전, 중장기 계획과 주체별 활동, 성과지표 설정)</li> <li>4. 계획내용(사업방향과 정책목표 부합, 계획범위,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사업추진 전략, 예산계획)</li> <li>5. 기대효과(지역경쟁력 향상, 정주환경 및 삶의 질 향상)</li> </ol>
사업추진실적 정성평가(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표 달성도(해당 사업의 연차별 추진목표 달성 여부)</li> <li>2. 사업에 대한 인식개선도(추진주체별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개선)</li> <li>3. 사업환류체계 적용(사업 환류체계구축 및 실천여부)</li> </ol>
사업결과 정량평가지표(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시설 면적 증가율(해당 문화시설 확충정도)</li> <li>2. 시설 이용객 증가(해당 시설 이용객 증가율)</li> <li>3. 운영 프로그램 증가율(해당시설 프로그램 증가율)</li> <li>4. 운영자립도 증가율(해당시설 운영자립도 증가율)</li> </ol>
지역기여도 정성평가지표(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경관 개선도(지역경관 및 이미지 개선효과)</li> <li>2. 정주 만족도(지역거주 만족도 개선효과)</li> <li>3. 삶의 질 충족도(개인 삶의 질에 대한 충족효과)</li> <li>4. 지역경쟁력 개선도(지역경쟁력 개선효과)</li> </ol>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참여 연구진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촌산업과

- 박 성 우 농촌산업과장
- 최 윤 석 도농교류담당 사무관
- 곽 재 은 도농교류담당 주무관

### 연구 자문

- 박 시 현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윤 진 옥 한국문화경관연구소 박사

### 연구수행기관

#### ■ 연구책임

- 황 길 식 (주)명소아이엠씨 대표이사

#### ■ 연구진행

- 유 영 민 (주)명소아이엠씨 팀장
- 박 한 식 (주)명소아이엠씨 이사
- 이 효 정 (주)명소아이엠씨 대리
- 박 정 원 (주)명소아이엠씨 대리